

강릉시 국제학교 설립모델 연구

2023. 10.

제 출 문

강릉시의회 의장 귀하

본 보고서를 『강릉시 국제학교 설립모델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 합니다.

2023. 10.

사)한국지방발전연구원 원장 정익래

- 목 차 -

제1장 과업의 개요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2. 연구 범위 및 연구내용	4
3. 연구 절차	6
제2장 강릉시 일반현황 분석	7
제1절 강원도 및 강릉시 일반현황	9
1. 자연환경	9
2. 행정구역 및 인구	11
3. 교육시설 현황	15
4. 문화시설 현황	17
5. 강릉시 일반현황 시사점	18
2절 강원도 및 강릉시 유학 현황	19
제3장 법제도, 사례/운영 현황 분석	21
제1절 법제도 분석	23
1. 국제학교 설립 관련 법제도	23
2. 관련 법제도 분석	31
3. 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 포함) 설립 절차	34
4. 강릉시의 국제학교 설립 가능성 검토	38
제2절 국제학교 사례분석	41
1.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	41
2. NLCS Jeju	46
3. BHA(Branksome Hall, Asia)	60
4. SJA Jeju(ST. Johnsbury Academy Jeju)	65
5. 채드윅국제학교	70
6. 대구국제학교	74
7. 국제학교 사례 관련 인터뷰 결과 및 시사점	79
제3절 기존 국제학교 설립과정 관련 기사검토	81
1. 제주도 및 타시도	81
2.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	88
3. NLCS Jeju	89
4. BHA(Branksome Hall, Asia)	90
5. SJA Jeju(ST. Johnsbury Academy Jeju)	91
6. 채드윅국제학교	92
7. 대구국제학교	93

제4절 국제학교에 대한 인식 및 수요 검토	95
1. 국제학교 설립 타당성 조사시 수요조사 결과 검토	95
2. 시사점	101
제5절 국제학교 운영 현황 분석	102
1. 국제학교 운영 현황	102
2. 제주국제학교 운영 현황	106
제4장 강릉시 국제학교 설립 관련 여건 분석	109
제1절 강릉시의 국제화 여건	111
1. 경제자유구역 현황	111
2. 강릉시 국제화 여건	115
제2절 강릉시 교육 국제화를 위한 SWOT 분석	119
제5장 강릉시 국제학교 설립 및 운영 모델 검토	121
제1절 강릉시 국제학교 설립 기준 검토	123
1. 국제학교 설립 모델 구상 기준	123
2. 국제학교 설립 기준 검토	124
제2절 강릉시 국제학교 설립 모델 검토	126
1. 공영형 외국교육기관 설립	126
2. 설립 자원 조달	127
제3절 강릉시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로드맵	129
1. 강릉시 국제학교 설립 관련 쟁점 및 위협요인 검토	129
2. 강릉시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로드맵	131

- 표 목차 -

<표 II-1> 행정구역	11
<표 II-2> 강원도 및 강릉시 인구	12
<표 II-3> 강원도 및 강릉시 외국인 인구	13
<표 II-4> 강릉시 읍면별 인구	14
<표 II-5> 강릉시 유치원 현황	15
<표 II-6> 강릉시 초등학교 현황	15
<표 II-7> 강릉시 중학교 현황	15
<표 II-8> 강릉시 고등학교 현황	16
<표 II-9> 강릉시 대학교 현황	16
<표 II-10> 교원 1인당 학생수	17
<표 II-11> 강릉시 공공도서관 현황	17
<표 II-12> 강릉시 박물관 현황	18
<표 II-13> 강릉시 문화공간 현황	18
<표 II-14> 강원도 및 강릉시 유학 현황	19
<표 III-1> 기타 국제학교 설립 관련 법제도 검토	32
<표 III-2> 외국교육기관 설립절차	37
<표 III-3>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 관련 개념 및 법적 근거	38
<표 III-4> 국제학교 유형별 장단점	39
<표 III-5>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 학비	43
<표 III-6>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 기숙사비	43
<표 III-7>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 기타 수수료	43
<표 III-8> 2023-24학년도 지원 가능 학년 및 나이	44
<표 III-9> 입학 평가항목	45
<표 III-10> 2022년 대학 입학 성과	49
<표 III-11> NLCS Jeju 학비	55
<표 III-12> NLCS Jeju 기숙사비	56
<표 III-13> NLCS Jeju 환불규정	56
<표 III-14> NLCS Jeju 입학 가능 학년	57
<표 III-15> NLCS Jeju 입학시험 항목	59
<표 III-16> 브랜섬홀 아시아 수업료	61
<표 III-17> 브랜섬홀 기숙사비	61
<표 III-18> 2023-2024 Annual Tuition & Boarding Fee 연간 수업료 및 기숙사비	69
<표 III-19> 2023-2024 Other Fees 기타 비용	69
<표 III-20> 채드윅국제학교 2023-2024 등록금	73
<표 III-21> 채드윅국제학교 2023-2024 기타 비용	73
<표 III-22> 한국인 지원 자격	76
<표 III-23> 지원구비서류	76

<표 III-24> 학비	77
<표 III-25> 기타비용	77
<표 III-26> 자녀의 교육문제	95
<표 III-27> 자녀의 교육비 부담	96
<표 III-28> 한국의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	97
<표 III-29> 명지국제학교의 진학여부	97
<표 III-30> 명지국제학교의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관계	98
<표 III-31> 유학경험	98
<표 III-32> 유학 보낼 의사	99
<표 III-33> 국제학교에 보낼 의사	99
<표 III-34> 국제학교 선택 시 고려사항	100
<표 III-35> 외국인학교 재학 이유	100
<표 III-36> 외국인 학교 선택 요인	101
<표 III-37> 외국인 학교 졸업 후 진로	101
<표 III-38> 전국 외국인학교 및 국제학교 학생수·고등 졸업진로	102
<표 III-39> 전국 외국인학교 및 국제학교 예산	104
<표 III-40> 국제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	105
<표 III-41> 제주국제학교 학생 충원률 및 중도탈락률	106
<표 III-42> 제주국제학교 진학률	107
<표 IV-1>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위치 및 면적	111
<표 IV-2> 경제자유구역 인센티브	114
<표 IV-3> 강릉시 중기지방재정계획(2023-2027) 중 교육 관련 투자계획	117
<표 IV-4> 지방자치단체 국제학교 설립 추진 현황	118
<표 V-1> 국제학교 설립 모델 구상 기준	123
<표 V-2> 국제학교 설립 추진 자치단체 재정여건 비교	130

- 그림 목차 -

<그림 I -1> 연구 절차	6
<그림 II -1> 강릉시 위치도	9
<그림 II -2> 지형현황 분석도	10
<그림 II -3> 행정구역	11
<그림 III -1>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	41
<그림 III -2>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 스쿨버스 운행일 정	42
<그림 III -3> NLCS Jeju	46
<그림 III -4> NLCS Jeju 기숙사	47
<그림 III -4> NLCS Jeju 2022 IB/IGCSE 시험결과	49
<그림 III -5> 브랜섬홀 아시아 5대 교육철학	61
<그림 III -6> 브랜섬홀 아시아 입학시험 절차	62
<그림 III -7> 브랜섬홀 아시아 학교시설	63
<그림 III -8> 브랜섬홀 아시아 공연 예술 센터	63
<그림 III -9> 브랜섬홀 아시아 체육시설	64
<그림 III -10> 브랜섬홀 아시아 기숙사	64
<그림 III -11> SJA Jeju	65
<그림 III -12> SJA Jeju 교육이념	66
<그림 III -13> SJA Jeju 시설현황	67
<그림 III -14> SJA Jeju 입학접수기간	67
<그림 III -14> SJA Jeju 필요서류	68
<그림 III -15> 채드워국제학교 로고 및 마스코트	70
<그림 III -16> 채드워국제학교 마을 학교 건물	70
<그림 III -17> 채드워국제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건물	71
<그림 III -18> 채드워국제학교 체육 시설	71
<그림 III -19> 채드워국제학교 야외공간	72
<그림 III -20> 채드워국제학교 캠퍼스 맵	72
<그림 III -21> 대구국제학교 학교시설	75
<그림 IV -1> 옥계 첨단소재 융복합산업지구 개발구상 및 토지이용계획	112
<그림 IV -2> 망상 국제복합 관광도시 개발구상 및 토지이용계획	113
<그림 IV -3> 우리나라 유학수지 추이	116
<그림 IV -4> 국제학교 재정지원 부담능력 관련 제주국제학교 모델	117
<그림 IV -5> 강릉시 교육 국제화를 위한 SWOT 분석	119
<그림 V -1> 수월성 수준에 따른 결과 예측	124
<그림 V -2> 학교간 비교 수준에 따른 결과 예측	124
<그림 V -3> 공공성 대 영리성 비교 수준에 따른 결과 예측	124
<그림 V -4> 학교운영방향 수준에 따른 결과 예측	125
<그림 V -5> 학교구성 수준에 따른 결과 예측	125

<그림 V-6> 재정지원 여부에 따른 결과 예측	125
<그림 V-7> 국제학교 설립시 기관별 역할	127
<그림 > 미군기지 주변지역 등 지원 관련 강원특별자치도내 지치단체 사업계획	129
<그림 V-8> 옥계첨단소재 융복합산업지구 규모	130
<그림 V-9> 외국교육기관 유치과정	131

제1장 과업의 개요

제1장 과업의 개요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올해 새롭게 출범(2023.6.18.)한 강원특별자치도는 특별법에 도입에 따라 상당한 자율성이 보장되는 특별자치도로서의 위상을 강화해나가고 있음
 - 하지만, 현재 특별법은 특례가 제한적이어서 이를 개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개정(안)에 국제학교 특례를 명문화하여 국제학교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 또한 인천, 포항, 청주, 평택 등 지자체도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교육기관을 추가 유치 또는 신설하고자 하고 있어서 국제학교 유치전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임
- 국제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관련 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제도 정비를 위한 특례가 반영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월 6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반영되지 못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통과되어 2024년 6월 8일 시행 예정임
- 국제학교는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지역경제 긍정적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외국어능력 향상,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됨
- 따라서, 강원특별법을 활용한 강릉시의 국제학교 설립은 장기적인 전략하에 추진되어야 하며, 강릉시는 국제학교 설립의 가능성과 방향성 검토와 강릉시에 적합한 국제학교 설립모델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연구 목적

- 강릉시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국제학교 설립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으로 기존의 법제도적 측면과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함
- 특히, 현재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제학교 설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여건의 변화가 있어야 강릉시가 국제학교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유리한 상황인지에 대하여도 논의하고자 함

2. 연구 범위 및 연구내용

1) 연구 범위

■ 시간적 범위

- 현황분석: 2010년 - 2022년
- 전망분석: 2023년 ~ 2027년 (5개년)

■ 내용적 범위

- 국내 외국어 전용 학교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 등) 설립 및 운영 실태
- 외국교육기관 및 국제학교 성공 및 실패 사례 분석
- 강릉시에 적합한 국제학교 설립모델 구체화 방안 모색

2) 연구 방법

■ 문헌조사 및 법제도 분석

-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제도·정책·논문을 분석하여 주요 연구방향을 제시
- 국제학교 설립 및 운영 관련 법 제도 검토

■ 통계 및 계량 분석

- 지역통계 및 교육 관련 통계를 이용한 정량적 분석

■ 사례조사

- 기초 현황자료를 토대로 우수사례를 파악하여 발전 잠재력 분석과 함께 대상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제약점등을 검토

■ 전문가 의견 수렴

-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반영되어야만 공감대가 형성되어 향후 계획의 추진 및 실현가능성 제고 가능

2) 연구 내용

■ 국내 국제학교 설립 및 운영 현황

- 국내 외국어 전용 학교(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제주국제학교)의 설립 및 운영 실태 조사
 - 설립 자금조달 유형 및 내용(국비 또는 별도 재정 지원 등)
 - 학생 모집현황(충원율, 외국인 및 내국인 비율, 학생 유치 홍보방안 등)

■ 외국교육기관 및 국제학교 성공 및 실패 사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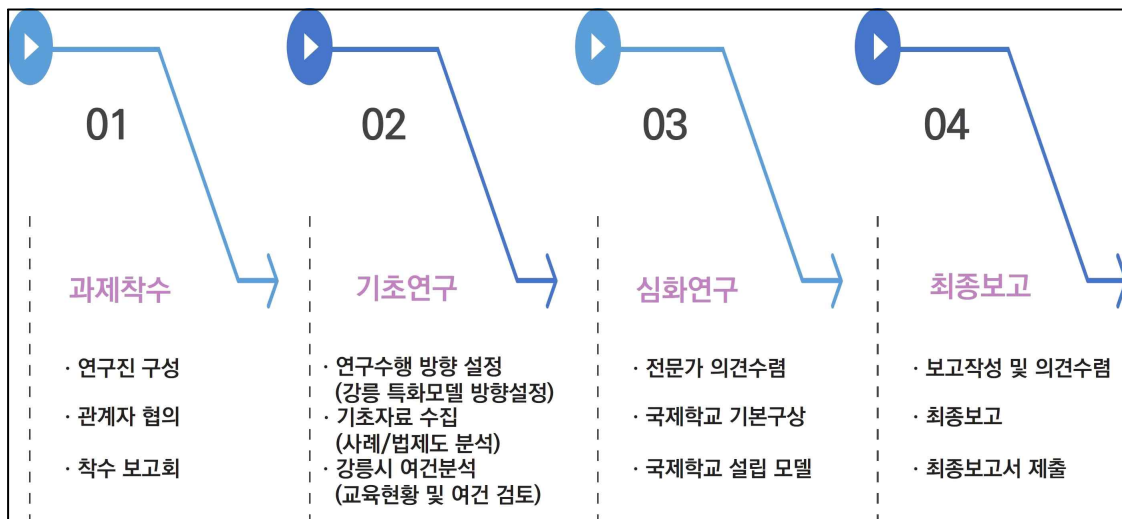
- 학교 설립의 법적·제도적 여건 분석
- 성공 및 실패 사례 분석
- 강릉시에 제시할 정책적 시사점 도출

■ 강릉시 적합한 국제학교 설립모델 구체화 방안 모색

- 사업의 비전, 목표, 실태조사, 사례 분석 등을 종합하여 국제학교 설립의 기본 구상과 방향성 제시
- 강릉시 국제학교 교육수요 추정
 - 국내 초·중·고 영어교육 현황
 - 국내 초·중·고 학생 외국 유학 현황
 - 영어 전용 초·중·고 과정 교육수요 추정
- 강릉시 국제학교 설립모델 유형 제시
 - 국제학교 설립 관련 법률 검토
 - 국제학교 설립 및 운영방안 검토

3. 연구 절차

- 본 연구는 4단계 과정을 거쳐서 수행함
- 첫째, 연구주제에 대한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연구수행의 틀 마련
- 둘째, 연구수행 방향 구체화 및 기초자료 수집을 통해 연구수행 진행하고, 이론적 논의의 내용을 강릉시 여건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 셋째,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해 실제 국제학교 관련 이슈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국제학교 기본구상 및 강릉시 여건에 부합하는 설립 모델 제시
- 넷째, 중간보고 이후 연구수행 결과에 대한 수정 보완을 통해 최종보고 및 보고서 제출



<그림 1-1> 연구 절차

제2장 강릉시 일반현황 분석

제1절 강원도 및 강릉시 일반현황

1. 자연환경

1) 위치

- 강릉시는 동쪽으로 동해바다, 서쪽은 홍천군 내면, 평창군 진부면·대관령면에 각각 접하고 있으며, 남쪽은 동해시, 정선군 임계면·북면에, 북쪽은 양양군 현북면·현남면에 이르는 강원도 5개 시·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음
- 해안 및 산악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해안형과 내륙형을 겸비한 입지적 요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역사적 문화자원과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한 관광도시로서 고도의 멋과 전통이 살아있는 역사·문화·교육의 도시, 녹색성장의 도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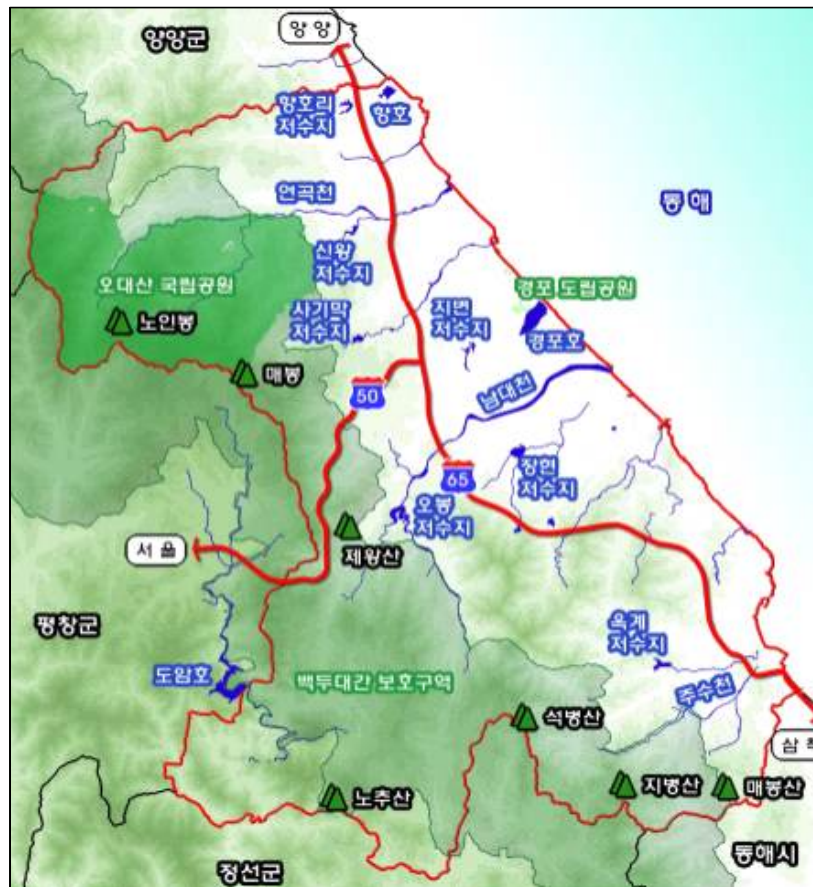


<그림 II-1> 강릉시 위치도

자료: 강릉시 홈페이지(<https://www.gn.go.kr/>)

2) 지형·지세

- 남북으로 길게 이어져 있는 백두대간(태백산맥) 동편에 위치하며, 동해안에서 6km 떨어져 있어 해양성 기후 특성이 나타나고 있음
-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지역간 경계가 이루고 있으며, 해발 100 ~ 1,300m의 산세들이 불규칙하게 분포하고 있음
- 백두대간 동측 동해안을 따라 평탄한 구릉지에 시가지가 밀집되어 있으며, 그 외 지역은 중산간 지대에 산발적으로 형성되어 있음
- 해안선은 48.3Km(면적 73.72km², 도서부 포함)로 완만하고 단조롭고, 한류와 난류가 흐르는 동해안의 영향으로 어종이 다양하며, 특히 해안을 따라 넓은 송림과 모래사장, 동해의 맑은 물로 인해 해수욕장이 산재하여 국민휴양관광지 및 향후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발전 가능성이 높음



<그림 II-2> 지형현황 분석도

자료 : 2035년 강릉 도시기본계획, 2021.

2. 행정구역 및 인구

1) 행정구역

- 강릉시의 행정구역은 1읍 7면 13동 510통·리 2,839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40km²의 면적으로 강원도 면적의 6.18%에 해당함



<그림 II-3> 행정구역

<표 II-1> 행정구역

읍면동	면적 (km ²)	리/통	반수	법정리동명
주문진읍	60.55	33	340	주문리, 교항리, 장덕리, 삼교리, 향호리
성산면	80.18	14	58	구산리, 관음리, 금산리, 위촌리, 송암리, 보광리, 어흘리, 오봉리, 산북리
왕산면	245.71	12	46	도마리, 목계리, 왕산리, 고단리, 송현리, 대기리
구정면	42.81	13	60	여찬리, 학산리, 구정리, 금광리, 어단리, 덕현리, 제비리
강동면	112.8	21	87	상시동리, 모전리, 안인리, 안인진리, 임곡리, 하시동리, 정동진리, 심곡리, 산성우리, 언벌리
옥계면	148.83	20	92	현내리, 천남리, 주수리, 도직리, 조산리, 남양리, 북동리, 낙풍리, 금진리, 산계리
사천면	70.89	16	88	미노리, 노동리, 석교리, 판교리, 사천진리, 덕실리, 방동리, 산대월리, 사기막리
연곡면	202.53	23	104	방내리, 영진리, 동덕리, 송림리, 행정리, 신왕리, 삼산리, 유등리, 퇴곡리
홍제동	3.86	22	159	홍제동
중앙동	1	20	101	남문동, 명주동, 성내동, 임당동, 금학동, 용강동, 성남동
옥천동	0.58	12	76	옥천동
교1동	5.3	41	251	교동
교2동		20	101	
포남1동	3.86	28	133	포남동
포남2동		35	185	
초당동	2.89	14	62	초당동, 강문동
송정동	3.49	19	108	송정동, 견소동
내곡동	4.96	26	172	내곡동, 회산동
강남동	16.08	46	228	장현동, 박월동, 담산동, 노암동, 유산동, 월호평동, 신석동, 운산동
성덕동	11.4	50	281	입암동, 청량동, 두산동, 학동, 병산동, 남향진동
경포동	23.06	25	107	유천동, 지변동, 죽현동, 대전동, 운정동, 난곡동, 저동, 안현동
계	1040.78	510	2,839	

자료: 강릉시 홈페이지(<https://www.gn.go.kr/>)

2) 인구현황

■ 강원도 및 강릉시의 인구

- 2022년 강원도의 총 인구수는 약 15.4만 명으로 남성 약77만 명, 여성 약76만 명으로 나타났으며 가구 수는 약 70만 가구로 나타남
- 강릉시의 인구수는 약 21만 명으로 강원도 전체에서 원주시 약 36만명, 춘천시 약 29만명에 이어 3번째로 높게 나타남

<표 II-2> 강원도 및 강릉시 인구

행정구역별(읍면동)	총 인구			가구(계)
	계	남자 (명)	여자 (명)	
강원도	1,536,498	772,947	763,551	693,576
춘천시	286,664	141,490	145,174	127,850
원주시	360,807	178,880	181,927	161,029
강릉시	211,381	104,845	106,536	98,998
동해시	89,426	45,423	44,003	39,333
태백시	39,428	19,881	19,547	18,663
속초시	82,806	41,037	41,769	37,920
삼척시	63,455	32,156	31,299	29,950
홍천군	67,977	34,954	33,023	30,410
횡성군	46,532	23,877	22,655	20,615
영월군	37,728	19,509	18,219	17,680
평창군	40,990	21,176	19,814	18,962
정선군	34,931	18,264	16,667	16,330
철원군	42,256	21,863	20,393	17,288
화천군	23,388	12,560	10,828	10,120
양구군	21,383	11,215	10,168	8,957
인제군	32,206	17,529	14,677	13,706
고성군	27,274	14,060	13,214	12,757
양양군	27,866	14,228	13,638	13,008

자료: 국가통계포털, 2022.

■ 강원도 및 강릉시의 외국인 인구

- 강원도의 외국인 인구수는 약 2.7만명으로 남성 1.5만명, 여성 1.3만명으로 나타났다으며 가구 수는 약 8천 가구로 나타남
- 강릉시의 외국인 인구수는 3,542명으로 강원도 전체에서 춘천시 5,542명, 원주시 5,381명에 이어 3번째로 높게 나타남

<표 II-3> 강원도 및 강릉시 외국인 인구

행정구역별(읍면동)	외국인 인구			가구(계)
	계	남자 (명)	여자 (명)	
강원도	27,633	14,766	12,867	8,010
춘천시	5,542	2,823	2,719	1,731
원주시	5,381	2,728	2,653	1,703
강릉시	3,542	1,845	1,697	1,222
동해시	1,084	616	468	286
태백시	393	114	279	97
속초시	1,587	957	630	397
삼척시	961	572	389	243
홍천군	1,347	728	619	329
횡성군	1,313	759	554	337
영월군	403	157	246	105
평창군	797	360	437	234
정선군	414	121	293	103
철원군	1,078	627	451	264
화천군	345	166	179	99
양구군	558	342	216	125
인제군	717	395	322	180
고성군	1,717	1,221	496	428
양양군	454	235	219	127

자료: 국가통계포털, 2022.

■ 강릉시 읍면별 인구

- 강릉시의 2022년 전체 인구수는 211,381명으로 세대수는 103,352세대로 나타남
- 성덕동이 28,037명(13.3%)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교1동(12.1%) 25,599명, 강남동 17,392(8.2%)명으로 나타남

<표 II-4> 강릉시 읍면별 인구

행정기관	인 구 수			구 성 비			성비	세대 수	세대 당인 구
	계	남	여	계	남	여			
강릉시	211,381	104,845	106,536	100	49.6	50.4	98.41	103,352	2.05
주문진읍	16,430	8,009	8,421	7.77	3.79	3.98	95.11	9,167	1.79
성산면	3,487	1,784	1,703	1.65	0.84	0.81	104.76	1,749	1.99
왕산면	1,548	841	707	0.73	0.4	0.33	118.95	896	1.73
구정면	4,263	2,174	2,089	2.02	1.03	0.99	104.07	2,050	2.08
강동면	4,056	2,146	1,910	1.92	1.02	0.9	112.36	2,209	1.84
옥계면	3,427	1,757	1,670	1.62	0.83	0.79	105.21	1,926	1.78
사천면	4,749	2,422	2,327	2.25	1.15	1.1	104.08	2,511	1.89
연곡면	6,305	3,177	3,128	2.98	1.5	1.48	101.57	3,293	1.91
홍제동	14,990	7,300	7,690	7.09	3.45	3.64	94.93	7,054	2.13
중앙동	4,663	2,236	2,427	2.21	1.06	1.15	92.13	2,792	1.67
옥천동	3,282	1,686	1,596	1.55	0.8	0.76	105.64	2,035	1.61
교1동	25,599	12,474	13,125	12.11	5.9	6.21	95.04	11,837	2.16
교2동	7,600	3,792	3,808	3.6	1.79	1.8	99.58	3,820	1.99
포남1동	10,536	5,126	5,410	4.98	2.43	2.56	94.75	5,507	1.91
포남2동	12,540	6,160	6,380	5.93	2.91	3.02	96.55	6,543	1.92
초당동	4,628	2,244	2,384	2.19	1.06	1.13	94.13	2,349	1.97
송정동	9,861	4,717	5,144	4.67	2.23	2.43	91.7	4,127	2.39
내곡동	16,615	8,354	8,261	7.86	3.95	3.91	101.13	7,923	2.1
강남동	17,392	8,733	8,659	8.23	4.13	4.1	100.85	8,225	2.11
성덕동	28,037	13,875	14,162	13.26	6.56	6.7	97.97	12,105	2.32
경포동	11,373	5,838	5,535	5.38	2.76	2.62	105.47	5,234	2.17

3. 교육시설 현황

1) 유치원

- 강릉시의 유치원수는 2020년부터 37개소를 유지하고 있으며 학급수는 98개, 원아수는 1,468명으로 매년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표 II-5> 강릉시 유치원 현황

(단위: 개소, 명)

연 별	원 수	학급수	원아수	교원수
2018	38	107	1,854	173
2019	36	99	1,786	164
2020	37	105	1,708	165
2021	37	97	1,517	158
2022	37	98	1468	153

자료 : 강릉시 통계연보, 2022.

2) 초등학교

- 강릉시의 초등학교 수는 2020년부터 38개를 유지하고 있으며 학급수는 509개, 학생수는 9,313명으로 매년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표 II-6> 강릉시 초등학교 현황

(단위: 개소, 명)

연 별	학교 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2018	37	516	10,120	768
2019	37	520	10,110	789
2020	38	512	9,771	791
2021	38	511	9,526	792
2022	38	509	9,313	797

3) 중학교

- 강릉시의 중학교 수는 2017년부터 12개를 유지하고 있으며 학급수는 200개, 학생수는 5,219명으로 나타남

<표 II-7> 강릉시 중학교 현황

(단위: 개소, 명)

연 별	학교 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2018	12	217	5,610	451
2019	12	210	5,278	439
2020	12	206	5,285	433
2021	12	200	5,220	424
2022	12	202	5,219	424

4) 고등학교

- 강릉시의 고등학교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포함 총 11개소로 학급수는 238명, 학생수는 5,135명으로 나타남
 - 일반고 : 국공립 5개소, 사립 3개소, 학급수 183개소 학생수 4,192명
 - 특수목적고 : 국공립 1개소 학급수 9개소, 학생수 174명
 - 특성화고 : 국공립 1개소, 학급수 46개소, 학생수 769명

<표 II-8> 강릉시 고등학교 현황

(단위: 개소, 명)

유형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총계	11	238	5,135	582
일반고(국공립)	5	105	2,385	263
일반고(사립)	3	78	1,807	168
특수목적고(국공립)	1	9	174	30
특성화고(국공립)	2	46	769	121

4) 대학교

- 강릉시의 대학교는 전문대학 2개소, 대학교 3개소 대학원 8개소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문대학 : 강원도립대학, 한국폴리텍(강릉캠퍼스)
 - 대학교 : 강릉원주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강릉영동대학교
 - 대학원 : 가톨릭관동대학교 경영행정창업대학,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가톨릭관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가톨릭관동대학교 일반대학원, 강릉원주대학교, 경영정책과학대학원, 강릉원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 강릉원주대학교 산업대학원

<표 II-9> 강릉시 대학교 현황

(단위: 개소, 명)

유형	학교수	학과수	학생수	교원수
전문대학	2	12	684	32
대학교	3	116	22,471	775
대학원	8	149	990	-

5) 교원 1인당 학생수

- 강릉시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6.1명으로 전국의 14.4명, 강원도의 13.1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10> 교원 1인당 학생수

(단위: 명)

시점	교원1인당 학생수(A÷B)			재적학생수(A)			교원수(B)		
	전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전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전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2018	15.86	14.85	18.02	8,981,562	303,234	51,796	566,345	20,415	2,875
2019	15.51	14.39	17.52	8,763,576	293,979	50,011	565,034	20,424	2,855
2020	15.17	13.87	17.08	8,593,199	281,853	48,437	566,340	20,315	2,836
2021	14.83	13.46	16.55	8,449,890	271,648	46,243	569,723	20,175	2,794
2022	14.41	13.14	16.13	8,285,220	263,694	44,525	575,001	20,067	2,761

자료: 국가통계포털, 2022., 교원1인당 학생수

4. 문화시설 현황

1) 공공도서관

- 강릉시의 공공도서관은 강릉시에서 운영하는 강릉 시립도서관, 모루도서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강릉교육문화관, 명주교육문화관 등 총 4개소가 운영중으로 나타남

<표 II-11> 강릉시 공공도서관 현황

(단위: 개소, 명)

유형	좌석수	자료수			도서관 방문자수
		도서	비도서	연속간행물	
강릉시립도서관	473	80,229	4,041	42	94,013
모루도서관	647	104,368		45	63,208
강릉교육문화관	324	193,266	6,044	269	219,770
명주교육도서관	365	106,007	4,696	26	51,353

2) 박물관

- 2021년 기준 강릉시 박물관은 대관령박물관, 오죽헌박물관, 강릉원주대학교 박물관, 가톨릭관동대학교 박물관 등 총 4개소가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남
- 금속, 토제, 도자기, 석, 유리보석 등 총 21,611여개의 소장품목이 전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12> 강릉시 박물관 현황

(단위: 명, 개)

구분	입장자	소장품목
계	545,236	21,863
대관령박물관	9,333	1,856
오죽헌박물관	534,868	5,738
강릉원주대학교박물관	634	7,151
가톨릭관동대학교박물관	401	7,118

자료: 강릉시 통계연보, 2022.

3) 문화공간

- 2021년 기준 강릉시 문화공간 현황은 공연시설 9개소, 전시시설 20개소, 기타시설 6개소가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남

<표 II-13> 강릉시 문화공간 현황

(단위: 개소, 명)

공연시설			전시시설	기타시설		
공공 공연장	민간 공연장	영화관	박물관·미 술관	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5	1	3	20	1		5

5. 강릉시 일반현황 시사점

- 동쪽으로 동해바다, 서쪽으로 산악지역을 접하고 있는 해안형과 내륙형을 겸비한 도시로 우수한 역사적 문화자원과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한 관광도시임
- 2022년 현재 강릉시 인구는 21만명으로 원주시 36만명, 춘천시 29만명에 이어 강원도에서 3번째로 큰 도시임
- 강릉시 외국인 인구는 3,542명으로 강원도에서 3번째로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임

- 초·중·고 학생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전문대학 2개소, 대학교 3개소 대학원 8개소로 운영 중에 있음
- 위와 같은 현황을 통해 강릉시는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나, 학생수가 점차 감소하는 지역으로 교육여건의 개선을 통해 지역의 활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외국인 거주자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어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됨

2절 강원도 및 강릉시 유학 현황

- 2018년 강원도의 유학현황은 266명으로 연평균 증가율 -21.5%로 인해 2022년에는 101명으로 나타남
- 2018년 강릉시의 유학현황은 17명으로 연평균 증가율 -4.7%로 인해 2022년에는 14명으로 나타남

<표 II-14> 강원도 및 강릉시 유학 현황

(단위 : 명)

구분		합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18년	계	266	171	61	34
	강릉시	17	4	7	6
2019년	계	230	149	58	23
	강릉시	26	19	6	1
2020년	계	190	114	55	21
	강릉시	14	8	4	2
2021년	계	109	80	24	5
	강릉시	9	7	1	1
2022년	계	101	78	17	6
	강릉시	14	11	1	2
연평균 증가율	계	-21.5	-17.8	-27.3	-35.2
	강릉시	-4.7	28.8	-39	-24.0

자료 : 강원도교육청, 통계연보, 각연도.

제3장 법제도, 사례/ 운영 현황 분석

제1절 법제도 분석

1. 국제학교 설립 관련 법제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p>제217조(국제고등학교의 설립·운영) ① 국가·제주자치도 또는 학교법인은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p> <p>② 국제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19조·제19조의2·제21조·제23조·제24조·제26조·제29조·제31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국제고등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과정에 수학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p> <p>④ 국제고등학교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및 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4조의4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p> <p>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항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항 및 제4항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보수 등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⑥ 국제고등학교의 교원임용과 국제고등학교 졸업자의 학력인정 등에 관하여는 제216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율학교”는 “국제고등학교”로 본다.</p> <p>제220조(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① 외국학교법인(「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외국학교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외국대학의 설립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도교육감 또는 도지사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승인하는 경우 각각 제5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p> <p>④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설립승인 절차 및 그 밖에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외국대학의 설립기준에 관하여 도조례로 정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⑤ 도교육감과 도지사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에 소속되는 위원회를 둔다.</p> <p>⑥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p> <p>⑦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은 “도교육감”으로, 외국대학은 “도지사”로 보고, “대통령령”(같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은 제외한다) 또는 “교육부령”은 “도조례”로 본다.</p> <p>⑧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p> <p>⑨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p> <p>⑩ 제주자치도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또는</p>
--

제14조에 따라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을 지원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학교기관의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참여 여부와 참여 방법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23조(국제학교 설립 등) ① 영어교육도시에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하 “국제학교”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국제학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교 간 상호 병설 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제학교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5조(국제학교 설립자격) 영어교육도시에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

2. 이 법, 다른 법령 또는 외국의 법령(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법인

제226조(설립승인 등) ① 제225조제1호의 자가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하려면 도조례로 정하는 시설·설비 등 요건을 갖추어 미리 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225조제2호의 자가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하려면 도조례로 정하는 시설·설비 등 요건을 갖추어 미리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도교육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국제학교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 승인하여야 한다.

③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에 국제학교의 명칭, 설립목적, 학사운영계획 등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제학교의 설립·운영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사항 중 도조례로 정하는 주요 사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학교의 설립 협의 또는 승인과 그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27조(위탁운영 등) ① 제226조제2항에 따라 국제학교 설립승인을 받은 법인(이하 “국제학교법인”이라 한다)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국제학교의 운영을 제225조제2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225조제1호의 자는 설립한 국제학교의 운영을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제225조제2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국제학교는 국제학교법인이 설립한 학교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제학교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28조(국제학교의 운영 등) ① 국제학교의 설립목적 달성을 수 있도록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국제학교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제학교의 장이 정하되, 국어 교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 교과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입학하는 외국인에게는 국어 교과와 사회 교과의 교육과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제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학년도,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 등 수업에 관한 사항
2. 학년제, 수업연한 등에 관한 사항
3. 국제학교의 교과용 도서 사용에 관한 사항
4.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입학자격, 입학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④ 국제학교의 학교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재학 중인 학생과 학교의 평가, 평가의 절차 및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인 국공립 국제학교의 수업료에 관한 사항은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다.

⑤ 국제학교의 장은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수학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해당 학교 과정에 입학(재입학·전학·편입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⑥ 국제학교 졸업자의 학력인정에 관하여는 제21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율학교”는 “국제학교”로 본다.

⑦ 국제학교의 학생은 국제학교 수학으로 인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12. 10.>

제229조(다른 법률의 적용) ①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징계, 학교생활기록, 학생 관련 자료의 제공에 관하여는 「유아교육법」 제14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25조제1항 및 제30조의6을 적용한다. 다만, 학생생활기록의 구체적인 작성과 그 방법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유아교육법」 제31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라 휴업명령·휴원처분 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다.

제230조(교원임용 등) ① 국제학교에 두는 교원의 자격과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제학교법인(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제외한다)이 설립·운영하는 국제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의 임면, 복무, 신분보장·사회보장 등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54조, 제54조의2,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 제59조, 제60조, 제60조의2,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 제66조의4 및 제70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에게는 같은 법 제56조, 제58조 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제3항 및 제66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제학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국공립 국제학교의 교원에 한정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 중 「교육공무원법」 제35조 각 호의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국공립 국제학교의 교원임용과 교직원 등에 관하여는 제2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율학교”는 “국제학교”로 본다.

제231조(회계처리 등) ① 국제학교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도교육감이 정하는 회계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처리는 그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을 따른다.

③ 국제학교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잉여금은 학교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④ 국제학교법인의 기관과 해산·합병은 그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국제학교법인의 기관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준용한다.

제232조(국제학교의 설치등기 등) ① 국제학교법인은 설립승인을 받은 국제학교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승인일부터 3주 안에 「민법」 제50조에 따른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와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국제학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33조(「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국제학교의 지도·감독, 재정지원 및 이에 따른 조치, 국제학교의 폐쇄승인 등에 관하여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학교법인”은 “국제학교법인”으로, “외국교육기관”은 “국제학교”로,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국제학교의 장”으로, “교육부장관”은 “도교육감”으로, “대통령령”은 “도조례”로, “학과”는 “학교”로 본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① 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해당 외국교육기관이 설립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교육부장관
- ② 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 ③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외국학교법인의 자격,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조건 등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8조 및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국가는 국민이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하려는 경우 외국거주요건 등을 이유로 입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과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 4. 4.>
- ⑦ 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교육 등으로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및 제54조의4제1항·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자격, 임용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 ⑧ 국제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4조·제26조·제29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⑨ 국제고등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외국인의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 ⑩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의 사회복지법인인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보육을 위하여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전용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30., 2011. 5. 19., 2015. 7. 24., 2021. 3. 2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 30., 2011. 5. 19., 2015. 7. 24., 2021. 3. 23.>

1. “외국학교법인”이라 함은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초등·중등·고등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2. “외국교육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설립·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은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1. 3. 23.>

제4조(설립자격)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외국학교법인에 한정한다. <개정 2021. 3. 23.>

제5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① 외국학교법인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 제1호에 따른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 제2호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2. 18.>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추천권자

가.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려는 외국교육기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른 행정기구의 장

나.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려는 외국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승인권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해당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교육부장관

②외국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신청서에 명칭, 설립목적, 학사운영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해당 외국교육기관의 승인권자(이하 “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2021. 3. 23.>

③제1항에 따른 승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④외국교육기관의 장은 설립승인 사항 중 명칭·설립목적·교사(校舍)·교지(校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⑤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절차 그 밖에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설치등기 등) ①외국학교법인은 설립승인을 받은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설립승인일부터 3주 내에 「민법」 제50조에 따른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의 등기와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사항 중 “이사”를 “외국학교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개정 2021. 3. 23.>

②제1항의 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학교법인의 해당 국가의 설립근거법령

2. 대한민국에서 외국학교법인을 대표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의 성명과 주소

③「민법」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와 제54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등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사”를 “외국교육기관의 장”으로, “법인”을 “외국교육기관”으로 본다. <개정 2021. 3. 23.>

④제3항에 따라 「민법」 제52조를 준용하여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사항의 변경이 외국에서 발생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승인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2021. 3. 23.>

제7조(외국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 외국학교법인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 및 제

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외국교육기관의 성립 등) ①외국교육기관은 제6조에 따라 설치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1. 3. 23.>

②제1항의 경우에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외국학교법인을 대표한다.

제8조의2(교직원) 외국교육기관의 교직원 임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사립학교법」 제57조 및 제70조의3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 12. 10.]

제9조(지도·감독) ①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은 승인권자가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②승인권자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제10조(학생정원) ①외국교육기관의 학생정원은 교원 및 의료인·약사·의료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정원을 제외하고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해당하는 외국 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1. 3. 23.>

②경제자유구역에 설치하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3. 23.>

제11조(학력인정) ①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을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2021. 3. 23.>

②「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을 졸업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대한민국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3. 23.>

③제1항에 따른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3. 23.>

제12조(외국교육기관의 회계처리) 외국교육기관의 회계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 등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3조(국·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 이 법에 의하여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외국학교법인에 대한 국·공유 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하여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지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등”을 “외국학교법인”으로 본다.

제14조(재정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21. 3. 23.>

제15조(지원에 따른 조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1.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외국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에의 참여.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지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외국학교법인이 설립·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공영형 외국교육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의 사전동의 없이 참여할 수 있다.

2.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으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는 일

3. 해당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예산운용이 지원의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변경에 관한 조치의 권고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1. 지원성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이 제1항제3호에 따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16조(외국교육기관의 폐쇄승인)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외국교육기관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제17조(시정명령 등) ①승인권자는 외국교육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2020. 3. 24., 2021. 3. 23.>

1. 제5조제1항에 따른 설립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5조제3항에 따른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원을 정한 경우
4.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이 산학협력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승인권자는 외국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설립승인을 취소하거나, 학과의 폐쇄 또는 학생의 모집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2021. 3. 23.>

1.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시정할 수 없는 경우

③승인권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설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교육기관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외국교육기관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제18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변경 또는 취소) ①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설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2021. 3. 23.>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설립승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외국교육기관이 개교예정일부터 1년 이상 개교하지 아니한 경우

②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설립승인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 30., 2011. 5. 19., 2013. 3. 23., 2020. 2. 18., 2021. 3. 23.>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폐지되거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2. 외국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는 외국학교법인이 폐지 또는 해산되는 경우

③외국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제19조(청문) 승인권자는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에 따라 설립승인을 취소하거나 학과의 폐쇄 또는 학생의 모집정지를 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2021. 3. 23.>

제20조(외국교육기관의 청산) ①외국교육기관은 제16조·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에 따라 폐쇄되거나 설립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전부에 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외국교육기관의 재산의 전부에 의해서도 변제하지 못하는 채무에 관하여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외국학교법인이 변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② 「민법」 제81조부터 제85조까지, 제87조부터 제92조까지, 제94조 및 제95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청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사”를 “외국교육기관의 장”으로, “법인”을 “외국교육기관”으로, “검사”를 “승인권자”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2021. 3. 23.>

③외국교육기관이 제1항에 따라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자본금·적립금 그 밖에 잉여금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안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우선 총당되어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④제1항에 따라 청산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재산은 이 법에 의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해당 외국학교법인의 다른 회계로 진출할 수 없다. <개정 2021. 3. 23.>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행 2024. 6. 8.]

제48조(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①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8조의2제4항, 제18조의3제2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3항, 제31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4조의2제4항, 제43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60조제3항, 제60조의2제3항, 제60조의3제3항 및 제63조제3항·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초·중등교육법」 제43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경우 그 입학자격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8조(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① 교육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군립학교·구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비·시설 등 설립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교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본다.

제29조(「지방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관한 특례) 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임용·보수·연수·신분보장·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제1항·제8항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교장과 그 밖의 교원은 특화특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한다.

제30조(「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① 교육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사업자(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는 외국어 전문교육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외국어 교원 및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② 교육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특구에서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으로 관할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운영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교육국제화특구의지정·운영및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초·중등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특구 안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는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관할 교육감(이하 “특구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초·중등교육법」 제23조 및 제29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교육국제화 기반 구축) 특구지방자치단체는 특구 내 국제화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화 교육을 목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의 설립
2. 외국어 전용 마을(어권별 다양한 국가의 문화 체험 및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시설과 각종 부대시설을 구비한 외국어생활구역을 말한다)의 조성

3. 외국어 전용 마을에 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외국어상용화의 단계적 추진

가. 공공기관의 외국어서비스

나.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복지·집회 시설 등의 외국어사용 환경 조성

다. 그 밖에 외국어상용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국제교류시설의 설치 및 지정

5. 그 밖에 교육국제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초·중등학교의 외국어 교육 강화) 특구 교육감은 초·중등학교의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어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구축·운영

2. 초등학교 내 외국어체험학습시설의 구축·운영

3. 외국어교원 양성 및 재교육과정의 강화

4. 그 밖에 초·중등학교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국가 및 특구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구 안의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관련 법제도 분석

1) 국제학교 설립 목적 및 설립 자격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 설립목적은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등 법령에 따른 특정지역의 외국인 교육여건을 향상시킴으로써 외국인의 투자 환경을 조성” 하는 것임
- 설립 자격은 다음과 같음
 - 외국학교법인 (외국교육기관법 제2조제1호)
 -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의하여 유아·초등·중등·고등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 외국교육기관 (경제자유구역법 제2조제5호 및 외국교육기관법 제2조제2호)
 - 외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분교를 포함)
 - 「경제자유구역법」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안에 설립·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설립·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

○ 설립 가능지역은 다음과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법 제220조)
-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법 제22조)
 -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시설·설비 등 기준에 관한 규칙
- 평택시(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8조)¹⁾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2조)²⁾
- 새만금사업지역(새만금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1조)

2) 기타 국제학교 설립 관련 법제도 검토

○ 기타 국제학교 설립 관련 법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III-1> 기타 국제학교 설립 관련 법제도 검토

법률	조항	주요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제29조(종합계획 수립)	-도지사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1) 제18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의 특례) ①외국학교법인인 「사립학교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3. 31., 2013. 3. 23., 2020. 2. 18.>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해당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구역이나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교육부장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및 지원,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 내지 제9항의 규정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 1. 30., 2010. 3. 31.>

2) 제41조(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거점지구에 있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거점지구에 있는 국내대학이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의 공동운영 및 인적·물적 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률	조항	주요내용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행 2024. 6. 8.]		-교육의 진흥 및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
	제48조(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외국인학교의 경우 그 입학자격은 도조례로 제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 한 규제특례법	제28조(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교육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 체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군립학교·구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를 설 립 운영
교육국제화특구의지정 ·운영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특구의 지정 등)	-시·도지사와교육감 공동으로 요청으로교육국제화특 구위원회의심의를 거쳐 특구 지정 -특구의 지정 요건 1.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우수한 여건 2. 초·중등학교의외국어 교육 및 지역사회 국제경 쟁력 강화 수요 형성 3. 교육국제화 기반 구축에 대한 기여도가 다른 시 ·도보다 우수 4. 그 밖에 특구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 는 조건 갖출것
	제15조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국가 및 특구지방자치단체는외국인의 교육여건을 개 선하기 위하여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 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제18조 (특구 시·도지사의출연 등)	-특구 시·도지사는특구의 조성을 위하여 관련 공공단 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출자
	제19조(국가 또는 특구지방자치단체소유의 국유· 공유 재산 무상대부 등)	-① 국가는 특구육성종합계획사업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또는 대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	제64조(교육특구의 지정)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일정 지역에 국제적인 교육환 경 및 지역 특화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구로 지정
	제67조(국제학교 설립 등)	-교육특구에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 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학교를 설립·운영
	제69조(국제학교 설립 자격)	-국가 또는 강원자치도 및 강원자치도의 시·군 -이 법, 다른 법령 및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법인
	제79조(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관한 특례)	-외국학교법인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국가 또는 강 원자치도 및 강원자치도의 시·군의 부지의 매입, 시 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 지원

3. 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 포함) 설립 절차

- 교육부는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에서 외국교육기관 설립 관련 제도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음

1) 외국교육기관 설립 개요

■ 제도 도입 목적

-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등 법령에 따른 특정지역의 외국인 교육여건을 향상시킴으로써 외국인의 투자 환경조성

■ 설립·인가권자

- 시도교육감
 - 외국학교 법인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대학) 및 시도교육감(초·중·등)의 승인을 얻어야함

■ 설립 자격

-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외국학교법인*에 한함(외국교육기관법 제4조)
 -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의하여 유아·초등·중등·고등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외국교육기관법 제2조)

■ 설립 가능 지역

-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인천, 광양만권, 부산·진해, 경기, 대구·경북, 충북, 동해안권(강릉시, 동해시), 광주, 울산 (* 20.12월 현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
-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8조)으로 강원특별자치도내에 춘천시(캠프 페이지), 원주시(캠프 룡)가 이에

해당하는 지역임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 새만금 사업지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1조)

■ 지도·감독

- 「외국교육기관법」 제9조(지도·감독)에 의해 대학은 교육부장관이 지도·감독권을 갖으며 초·중등은 교육감이 지도·감독권을 갖음

■ 국내 학력인정

-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을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으로 지정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교과 중에서 국어 및 사회(한국사 등 교육부장관이 사회 관련 교과로 인정하는 교과를 포함한다)를 포함하여 2개 교과 이상을 주당 각각 2시간 이상 내국인 학생이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운영해야함

■ 입학자격

- 제한없음
 - (내국인비율)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내국인은 정원의 30%까지 입학 가능하며, 교육감이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정원의 50%까지 입학 가능

■ 관련 법령

- 심사·운영 관련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 『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교육부 고시 제2014-49호)』
- 기타 참고법령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 설립절차

<표 III-2> 외국교육기관 설립절차

구분	내용
설립준비 단계	(1) 시도교육감 의견 조회(국고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 유치 지자체(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외국학교 유치와 관련해 교육감의 의견 요청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 교육감이 외국학교 본교의 우수성, 국내 분교 설립·운영계획(교원, 재정, 교육과정 등) 등을 검토하여 설립준비금 지급에 이견이 있는지 여부를 유치기관에 통보 (2) 유치확정 - 외국학교법인과 유치 지자체(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 간 MOU 체결 및 계약 (3) 설립준비 - 교지, 교사, 시설·설비 등을 준비하여 여건 마련 (4) 신청서작성 - 체크리스트와 설립심사 신청 매뉴얼을 참고하여 작성
심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 사위원회에서 심사)	(1) 서류심사 - 외국교육기관 설립신청자, 설립계획, 운영계획 등 설립기준 준수 여부 (2) 면담심사 - 법인, 분교 관계자, 교원의 면담 및 심사 (3) 분교 현지실사 - 분교의 시설설비 점검 - 유치 지자체(또는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 면담 (4) 본교 현지실사 - 본교 교원 및 총장 등 책임자, 필요시 본국 교육부 담당자 면담 - 법인 운영학교 시설 및 제출 서류 등의 현지 확인 (5) 종합심사 - 설립 승인 여부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 도출
설립승인 이후 단계	(1) 법인 등록 -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등기(설립 승인일로부터 3주 이내) (2) 설립승인 조건이행 - 이행의무조건, 이행권고사항의 이행사항을 해당 교육청에 제출 - 설립승인 조건을 미 이행한 경우 설립승인 취소 또는 학생정원 축소·학생모집 정지 등 행정적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3) 개교 - 승인내역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고 학교운영

4. 강릉시의 국제학교 설립 가능성 검토

1)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검토

- 본 연구의 용어 정의 : 외국인 전용 학교(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는 “국제학교”로 표기하며,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된 국제학교는 “제주국제학교”로 표기함
- 외국인 전용 학교 관련 개념 및 법적 근거로 강릉시가 유치할 수 있는 국제학교는 외국교육기관으로서의 국제학교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인천, 광양만권, 부산·진해, 경기, 대구·경북, 충북, 동해안권, 광주, 울산)내 설치 가능함
- 또한, 외국인학교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전국 어디에나 설치 가능함

<표 III-3>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 관련 개념 및 법적 근거

구분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에 의한 국제학교
개념	국내 교육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 운영하되 해당 국가의 교육과정과 교원자격 등에 관해서는 외국 법령을 적용받는 학교	외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등 특정한 지역에 설립 운영되는 교육기관	특별법이 규정한 특정지역이 속한 지자체와 위탁운영(외국법인이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운영) 법인의 계약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근거법률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설립목적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 교육 -외국에서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에 대한 교육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거주하는 외국인 교육여건 향상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외국인의 생활여건 개선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
설립가능 지역	전국	-제주특별자치도 - <u>경제자유구역(인천, 광양만권, 부산·진해, 경기, 대구·경북, 충북, 동해안권, 광주, 울산)</u> -평택시 - <u>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주변 지역(춘천시, 원주시)</u>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새만금사업지역	특별법이 규정한 특정지역 (현재는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 내)
교육대상 학교급	유, 초, 중, 고교(국내학교법인은 초 중 고교)	유, 초, 중, 고교, 대학	유, 초, 중, 고교

- 강릉시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유치에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에서 제시한 교육특구 지정을 통한 국제학교 설립(안)은 경제자유구역을 가지고 있는 강릉시의 입장에서 볼 때, 지리적 우위를 상실할 수 있어 법적 기반을 마련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강원특별자치도내 춘천시(캠프 페이지), 원주시(캠프 룡)는 『주한미군 공역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한 지역으로 두 지역의 국제학교 설립 추진시 경쟁해야 할 상황임

2) 국제학교 유형별 장단점 검토에 따른 강릉시의 접근 방향

- 강릉시의 경우 강원도민이 모두 활용할 수 있으며, 국제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외국교육기관의 유치를 통해 지역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에 부합하는 국제학교를 유치할 필요가 있음

<표 III-4> 국제학교 유형별 장단점

학교종류	장점	단점
국제고등학교	-외국인 교원 임용가능	-교육과정의 정규교원 임용 등 교육청 통제
외국인학교	-국제적 프로그램 운영	-3년 이상 외국거주자만 입학 가능 -강릉시민 반발
교육특구학교	-강릉시가 직접 설립 운영-외국인 교원 임용 가능	-강릉시의 재정적 부담 -교육과정 통제
외국교육기관	-국제적 프로그램 운영 -외국인 교원 임용 가능	-설립자가 외국학교법인으로 한정 -유치상 어려움 -내국인 부분적 제한 -교육부장관의 설립승인
제주국제학교	-국제적 프로그램 운영 -외국인 교원 임용 가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설립 승인	-설립자가 외국학교법인으로 한정 -유치상 어려움

-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학교 유형별 장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강릉시는 제주국제학교를 지향점으로 표방할 필요는 없으며, 강릉시의 여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직접 국제학교를 설립할 경우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 며, 학교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따라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고려해야 하며, 강원도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제2절 국제학교 사례분석

1.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



<그림 III-1>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

자료 : 한국국제학교 제주 캠퍼스 홈페이지, <https://kis.ac/>

■ 개요

- 국제기구 인증명: WASC(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 개교일 : 2011. 10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글로벌에듀로 260번길 34 (초등학교 및 중학교)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글로벌에듀로 260번길 8 (고등학교)

- 커리큘럼 : Advanced Placement

자료 : 한국국제학교 제주 캠퍼스 홈페이지, <https://kis.ac/>

- 운영 형태: 공립(초등/중등), 사립(고등)
- 학급 수 : 57 학급
- 학생 수 : 1,078명
 - 2022~2023학년도 기준 KIS 학생 충원율은 97%, 대기학생 191명

자료 : 제주의 소리, '학생수 2배로 경증' 제주 공립 한국국제학교 증축 승인, 2022.10.05.

- 교원 수 : 171명

○ 직원 수 : 86명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통계포털, 2022.

■ 시설 현황

○ 고등학교

- 지하 1층, 지상 4층, 전체면적 3만1천287㎡
- 교사동, 기숙사동, 지원동 설립

○ 기숙사

- 3동(수용인원: 262명)초중: 31.3% 고등: 44.4%

○ 스쿨버스 운행

- 등교 3대, 하교 5대의 버스가 운행

등교				하교		
A 버스 (하귀 - 뜨런채)				A 버스 (하귀 - 뜨런채)		
No.	정류장	시간 (월~목)	시간 (금)	No.	정류장	시간
1	타워프로빌	6:56	7:32	1	KIS 초등	16:20
2	뜨런채	7:02	7:36	2	KIS 고등	16:25
3	노형 e면한세상	7:03	7:39	3	평화조영	16:50
4	미리내마을 중흥S클래스	7:04	7:40	4	해안동입구	16:57
5	우리동약국	7:17	7:50	5	하귀 제이마트	17:05
6	일우한란 아파트	7:18	7:52	6	일우한란 아파트	17:10
7	하귀 제이마트	7:25	8:00	7	우리동약국	17:12
8	해안동입구	7:33	8:12	8	미리내마을 중흥S클래스	17:20
9	평화조영	7:37	8:15	9	노형 e면한세상	17:22
10	KIS 초등	8:10	8:50	10	뜨런채	17:24
				11	타워프로빌	17:35
B 버스 (한라초 - 아라)				B 버스 (한라초 - 아라)		
No.	정류장	시간 (월~목)	시간 (금)	No.	정류장	시간
1	모던하우스	7:05	7:40	1	KIS 초등	16:20
2	연동 대령 1차	7:16	7:51	2	KIS 고등	16:25
3	한라초	7:18	7:53	3	노형 아이파크 2차	17:05
4	노형 아이파크 2차	7:23	7:58	4	한라초	17:10
5	KIS 초등	8:10	8:50	5	연동 대령 1차	17:17
				6	모던하우스	17:30
서귀포버스 (25인승)				서귀포버스 (25인승)		
No.	정류장	시간 (월~목)	시간 (금)	No.	정류장	시간
1	산남새마을금고	7:15	7:50	1	KIS 초등	16:20
2	해양경찰서	7:25	8:00	2	KIS 고등	16:25
3	상록아파트	7:26	8:09	3	중흥S클래스	17:05
4	유송한내들	7:29	8:04	4	유송한내들	17:07
5	중흥S클래스	7:30	8:05	5	상록아파트	17:08
6	KIS 초등	8:10	8:45	6	해양경찰서	17:10
				7	산남새마을금고	17:20
JK-K 버스 (15인승)				JK-K 버스 (15인승)		
No.	정류장	시간		No.	정류장	시간
1	KIS 초등	15:00		1	KIS 초등	15:00
2	중흥S클래스	15:40		2	중흥S클래스	15:40
방과후 버스 (15인승)				방과후 버스 (15인승)		
No.	정류장	시간		No.	정류장	시간
1	KIS 초등	17:30		1	KIS 초등	17:30
2	하귀 제이마트			2	하귀 제이마트	
3	뜨런채			3	뜨런채	
4	한라초			4	한라초	

<그림 III-2>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 스쿨버스 운행일 정

자료 : 한국국제학교 제주 캠퍼스 공식 홈페이지, <https://kis.ac/updatebus>.

■ 학비

○ 학비

<표 III-5>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 학비

학년	1학기	2학기
JK - K	KRW 7,650,000+USD 4,009	KRW 7,650,000+USD 4,009
Grades 1- 5	KRW 8,085,000+USD 4,237	KRW 8,085,000+USD 4,237
Grades 6 - 8	KRW 8,400,000+USD 4,402	KRW 8,400,000+USD 4,402
Grade 9	KRW 9,990,000+USD 5,235	KRW 9,990,000+USD 5,235
Grade 10	KRW 10,350,000+USD 5,424	KRW 10,350,000+USD 5,424
Grade 11	KRW 10,710,000+USD 5,613	KRW 10,710,000+USD 5,613
Grade 12	KRW 11,070,000+USD 5,801	KRW 11,070,000+USD 5,801

자료 : 한국국제학교 제주 캠퍼스 공식 홈페이지, <https://kis.ac/updatebus>.

○ 기숙사비

<표 III-6>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 기숙사비

학년	1학기	2학기
Grades 6 - 8	KRW 9,330,000	KRW 9,330,000
Grades 9- 10	KRW 9,330,000	KRW 9,330,000
Grades 11 - 12 (Single)	KRW 9,330,000	KRW 9,330,000

○ 기타 수수료

<표 III-7>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 기타 수수료

구분	비용
기술 수수료	JK-K KRW 200,000 (환불불가)
	Grades 1-8 KRW 300,000 (환불불가)
	Grades 9-12 KRW 400,000 (환불불가)
교과서 보증금 (G1-G12)	KRW 300,000 (환불가능)
입학금 (JK-G12)	KRW 3,000,000 (환불불가)
전현료 (JK-G12)	KRW 400,000 (환불불가)

- 수업료, 기숙사비, 스쿨버스비만 일정에 따라 환불
- 교과서 보증금은 졸업 시 반환되며 철회 시 도서가 양호한 상태로 반납 되어야 함
- 연중 견학, 교육 목적의 여행 또는 초청 연사 방문이 있으며 이러한 활동의 비용은 학년에 따라 다름

■ 입학절차

- 지원하고자 하는 학년에 현재 공석이 없는 경우에는, 대기명단(Wait list)에 등록
- 모든 지원자는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하며, 서류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 응시가 불가능

<표 III-8> 2023-24학년도 지원 가능 학년 및 나이

한국학교에서 전학 오는 경우		해외 및 국제학교에서 전학 오는 경우	
학년	출생년월	학년	출생년월
JK	2018/1 - 2018/12	JK	2018/8 - 2019/7
k	2017/1 - 2017/12	k	2017/8 - 2018/7
1	2016/1 - 2016/12	1	2016/8 - 2017/7
2	2015/1 - 2015/12	2	2015/8 - 2016/7
3	2014/1 - 2014/12	3	2014/8 - 2015/7
4	2013/1 - 2013/12	4	2013/8 - 2014/7
5	2012/1 - 2012/12	5	2012/8 - 2013/7
6	2011/1 - 2011/12	6	2011/8 - 2012/7
7	2010/1 - 2010/12	7	2010/8 - 2011/7
8	2009/1 - 2009/12	8	2009/8 - 2009/7
9	2008/1 - 2008/12	9	2008/8 - 2008/7
10	2007/1 - 2007/12	10	2007/8 - 2007/7
11	2006/1 - 2006/12	11	2006/8 - 2006/7
12	2005/1 - 2005/12	12	2005/8 - 2005/7

○ 지원 단계

- Step 1: 온라인 지원서를 작성
- Step 2: 지원에 필요한 추가 서류 제출
 - 신분증
 - * (한국 국적자): 지원자의 초본 및 여권 사본
 - * (이중국적자또는 외국인): 지원자의 여권 사본과 외국인 등록증
 - 성적표(현재 학년 포함 3년치)
 - * (한국 학교 재학생): 학교생활기록부II
 - * (국제학교, 해외학교 재학생): 성적증명서(Transcript)
 - G9-G11의 지원자의 경우, 한국 학교 생활기록부는 영어로 공증을 받아야 함
 - 추천서
 - * G2 - G3: 현재 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담임교사 1부
 - * G4 - G7: 현재 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담임교사와 영어교사 각 1부
 - * G8 - G11: 현재 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영어교사와 수학교사 각 1부
 - * 추천서는 반드시 해당 교사가 작성 후 직접 학교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 방법은 온라인 지원서를 통한 작성이 가능함. 추천서 양식은 학부모님께서 체크리스트 추천서 업로드 시 교사 이메일을 기재해서

send 버튼을 눌러주시면 바로 링크가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교사분께서는 링크를 클릭하여 추천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별도로 학부모님과 소통은 필요하지 않음.

- SSAT 시험 성적표 (선택)
 - * G6이상의 학생들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응시한 SSAT 성적이 있을 경우, 성적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단, 이것은 필수는 아님.
- Step 3: 시험 전형료를 납부 (환불 불가)
- Step 4: 입학 시험에 응시
 - 모든 입학 시험 결과와 입학사정위원회의 결정과 관련된 정보는 학생과 학부모님에게 제공되지 않음

<표 III-9> 입학 평가항목

학년	평가 항목				
	수학	독해	작문	인터뷰	행동놀이관찰
JK - Grade 1	X	X	X	O	O
Grade 2	X	X	O	O	O
Grade 3	X	O	O	O	X
Grade 4 이상	O	O	O	O	X

- Step 5: 입학 시험 결과 발표
- Step 6: 입학 허가 및 등록 절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제출
 - Medical History Form 제출

2. NLCS Jeju



<그림 III-3> NLCS Jeju

■ 개요

- 국제기구 인증명: CIS(Council of International Schools)
- 개교일 : 2011. 09
- 커리큘럼 : International Baccalaureate
- 학교 구성
 - 주니어 스쿨
 - 퍼스트 스쿨(First School) (리셉션 및 1학년)
 - 로어 스쿨(Lower School) (2-3학년)
 - 시니어 스쿨
 - 미들 스쿨 (7학년부터 11학년)
 - 식스 폼(Sixth Form) (12-13학년)
- 운영 형태: 사립
- 학급 수 : 73 학급
- 학생 수 : 1,455명
- 교원 수 : 202명
- 직원 수 : 103명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통계포털,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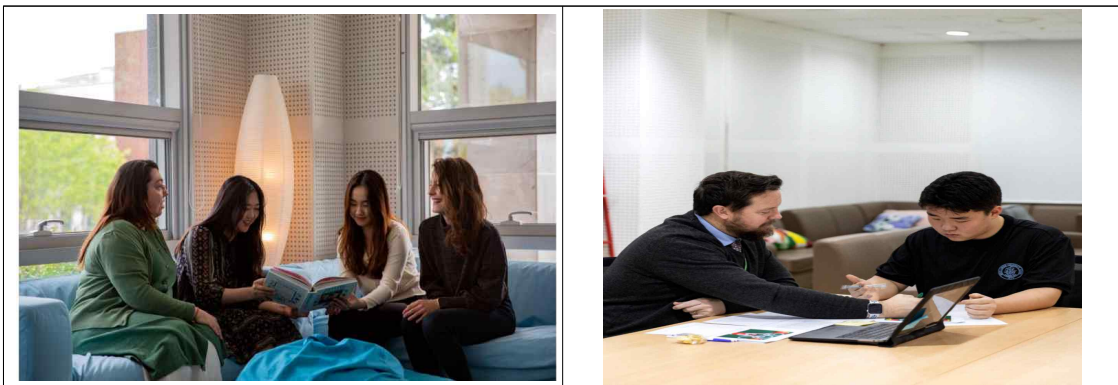
■ 시설 현황

○ 학교 시설

- 총 면적 10만4,385m²
- 최첨단 교실 (스마트 전자칠판 등), 모든 설비를 갖춘 과학실험실, 퍼스트스쿨/로위스쿨 도서관, 미술전용교실, 음악전용교실, 퍼스트스쿨/로위스쿨 강당
- 계단식 강의실, 리사이틀룸, 콘서트홀, 대공연장(PAC), 대강당, 다양한 인조구장 및 경기장, 스포츠센터, 수영장

○ 기숙사

- 수용 가능 인원: 952명(총학생 대비 기숙사 수용률 71%)
- 총 8개의 기숙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등학생을 위한 발리(Bali), 12~13학년 식스폼(Sixth Form)을 위한 한라 노스(Halla North)와 한라 이스트(Halla East), 그리고 7~11학년 학생들이 생활하는 물챗(Mulchat), 거문(Geomun), 사라(Sarah), 저지(Jeoji), 노로(Noro). 제주 오름 8개의 이름으로 설립



<그림 III-4> NLCS Jeju 기숙사

자료 : <https://korean.nlcsjeju.co.kr/>, 기숙사 안내서

■ 교육철학

○ 교육목적

- NLCS UK의 전통, 철학, 관습을 바탕으로 최상의 교육을 제공한다.
- 모든 학생들이 각각의 재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진취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 모든 학생들을 소중히 여기고 열정과 배움에 대한 흥미를 부여할 수 있는 교직원을 양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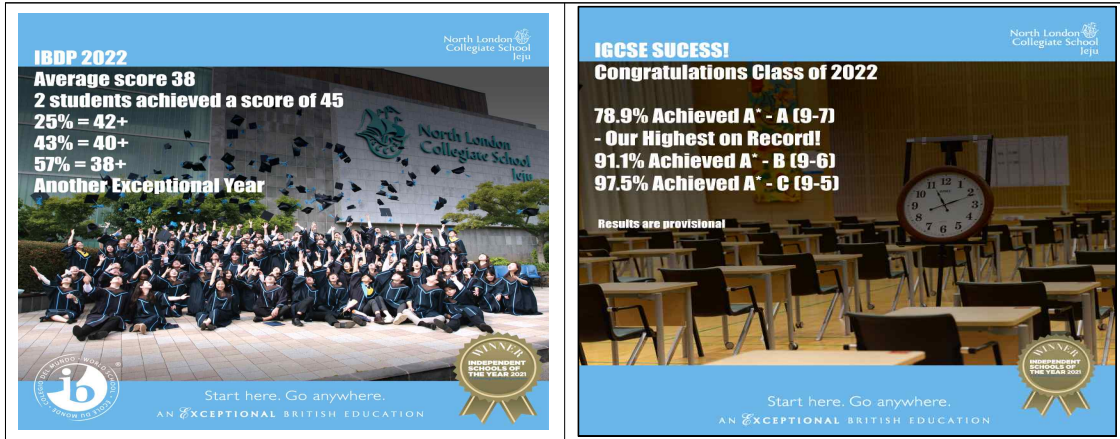
- 학생들에게 학업에 대한 우수한 성취가 가능함을 알려준다.
- 학생들이 훌륭한 인성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 학생들 사이 및 학생과 교직원 사이에서 나이, 문화, 배경을 뛰어넘는 우호적 관계를 바탕으로 서로 존경할 수 있는 공동체를 조성한다.
- 학생들이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 하지 않도록 다양한 학문적 도전을 격려한다.
- 타인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겸비한 미래 지향적이며 글로벌 마인드를 지닌 젊은 청년들을 발굴한다.

○ 교육 목표

- 학문적 우수성
 - 본교 학생들은 재학하는 동안 다양한 분야에 걸쳐 탁월한 학문적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학생들은 열정을 느끼는 분야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누리며, 자신의 잠재력을 발전합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열정적인 사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 폭넓은 경험
 - 본교 학생들은 공식적인 교육과정 외에도 광범위한 교과 병행 활동을 통해, 본인이 열정을 느끼고 관심 있는 분야를 찾게 될 것입니다.
- 글로벌 시민의식
 - 본교 학생들은 국경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글로벌 마인드가 필수적인 시대에 발맞춰 준비하게 됩니다. 더불어 타인을 위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 학교의 가치
 - 본교 학생들은 타인과 소통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뛰어난 도덕성과 윤리적 가치를 갖춘 이들로 성장할 것입니다.
- 미래의 성공
 - 본교 학생들은 전 세계 우수 대학에 진학할 뿐만 아니라, 성공적이고 행복하며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역량과 자세, 자질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 인성
 - 본교 학생들은 어려움을 극복할 줄 알고, 자신감을 가지고 독립적인 사고를 하는 청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 2021-2022 대입시업 결과 및 입학성과

○ 2022 IB/IGCSE 시험결과



<그림 III-4> NLCS Jeju 2022 IB/IGCSE 시험결과

자료 : <https://korean.nlcsjeju.co.kr/입학 페이지>

○ 2022년 대학 입학 성과

<표 III-10> 2022년 대학 입학 성과

국적	대학 이름	합격	진학
캐나다	Brock University	1	
	McGill University	1	
	Queen's University	1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9	
	University of Toronto	36	7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1	
홍콩	The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9	2
	University of Hong Kong	16	3
싱가폴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1	1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3	3
일본	Nagoya University	1	1
	Sophia University	1	
	Waseda University	1	
대한민국	Yonsei University	4	4
	POSTECH	1	1
프랑스	ESSEC Business School	1	1
영국	Bath Spa University	1	
	Bournemouth University	1	
	Brunel University London	1	
	Cardiff University	3	
	Durham University	8	
	Goldsmiths, University of London	1	
	Imperial College London	15	5
	King's College London	32	1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2	1
	Loughborough University	2	
	Newcastle University	1	1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1	
	Royal Academy of Music	2	1
	Royal Holloway University of London	1	
	The University of Edinburgh	13	
	The University of Warwick	19	
	University College London	27	6
	University of Bath	2	
	University of Brighton	1	
	University of Bristol	4	
	University of Cambridge	4	3
	University of Chichester	2	
	University of Exeter	1	
	University of Leeds	2	
	University of Manchester	13	1
	University of Nottingham	2	
	University of Oxford	2	2
	University of Portsmouth	1	
	University of Reading	1	1
	University of Roehampton	1	
	University of Sheffield	4	
	University of Southampton	2	
	University of St Andrews	3	1
	University of Stirling	1	
	University of Sussex	1	
	University of the Arts London	1	1
	University of York	1	
	Adelphi University	1	
	American University	1	
	ArtCenter College of Design	1	
	Boston University	11	2
	Brandeis University	1	
	California College of the Arts	2	
	Carnegie Mellon University	6	2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5	2
	College of Wooster	1	
	Columbia University	1	
	Cornell University	1	
	Drexel University	1	
	Duke Kunshan University	1	
	Duke University	1	1
	Emory University	1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1	1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3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3	
	Johns Hopkins University	1	1
	Manhattan School of Music	1	1

미국

Maryland Institute College of Art	1	
Massachusetts College of Pharmacy & Health Sciences	3	1
Michigan State University	2	1
New York University	22	13
Northeastern University	6	
Northwestern University	1	1
Nova Southeastern University	1	
NYU Shanghai	1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5	2
Pratt Institute	3	1
Purdue University	10	1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1	1
Rice University	1	1
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	1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5	
School of Visual Arts	3	2
Stanford University	1	1
Swarthmore College	1	1
Syracuse University	3	1
Temple University	1	
The New School	5	2
Trinity College	1	
Tufts University	4	3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9	5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13	1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24	1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10	3
University of California, Merced	2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7	1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18	1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13	1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Cruz	4	
University of Chicago	1	1
University of Connecticut	1	
University of Detroit Mercy	1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23	2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2	1
University of Michigan	3	
University of Minnesota, Twin Cities	2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	1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rlotte	1	
University of Rochester	2	
University of San Francisco	1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7	5
University of the Pacific	1	1
University of Washington	4	2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6	1

자료 : <https://korean.nlcsjeju.co.kr/>, 입학 페이지

■ 2020-2026년도 학교 발전 계획(SDP)

○ ACADEMIC ETHOS AND EXCELLENCE(학업 우수성 및 정신 고양)

- 주니어스쿨

- 영감을 불어 넣는 수업의 난이도(도전) 및 속도, 구성을 통해 학습의 즐거움 일깨우기
- 폭넓은 평가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전 의식을 고취시키는 교수학습의 영향력 추적 및 측정

- 시니어스쿨

- 다른 과정에도 해당하나, 특히 KS3 수업(학문적 영어 실력 향상 등)에 대한 적정 속도 및 난이도(도전), 구조
- 보다 협동적이면서 화합적인 KS2에서 KS3 학습 진입
- 역량강화(Enrichment) 기회 확대, 그리고 2021년부터 일관성과 수준 향상
- 학습 강화 자원으로서 도서관 활용 극대화

○ EVERY CHILD MATTERS; THEIR WELLBEING IS CENTRAL TO EFFECTIVE LEARNING (학생 각 개인을 중요시하므로, 그들의 웰빙은 효과적인 학습의 근간이 된다.)

- 주니어스쿨

- 구 및 데이터를 활용하여 웰빙과 학생 진전도의 상관관계 모니터링
- 학생 각 개인의 웰빙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튜터 프로그램 제공
- 주니어스쿨 전체적으로 긍정적이면서 회복적인 행동 문화를 실천하여 전교생에게 지원적 환경 조성
- 유관부서의 연계성을 높여 생활지도 모니터링 수준 향상
- 가치 기반 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해 교과과정을 넘나드는 학습자상(Learning Habits) 실천 계속

- 시니어스쿨

- 변경 사항이 발생해도 통학학생 및 기숙학생에게 효과적인 생활지도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을 수 있도록 우수 사례 및 기존 계획 강화, 통학 및 기숙학생에게 효과적인 생활지도 시스템 제공
- 교내 의사결정 과정에 아동(학생) 중심 접근법 내재화
- 학교 공동체 일원이자 하위 집단(예, 하우스) 구성원으로서 느끼는 감정이 긍정적인 연관성과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Ensure positive associations and pride typify feelings generated by being a member of the School and sub-groupings, eg. House.

- 높은 수준의 일관적인 튜터 지도
 - 웰빙 문화 발전 및 강화
 - 웰빙 및 효과적인 대인관계 형성을 위한 우수한 실내 및 야외 부속 공간 및 시설
 - 기숙사와 하우스 체계 분리(added 2021년에 추가) 및 (통학학생 및 기숙학생 모두 해당) 전교생에 대한 생활지도 추가 지원, 그리고 기숙학생의 일상 생활 및 학교/기숙사 일과 사이의 효과적인 연계성(2022년에 추가)에 대한 생활지도 검토
- EXCEPTIONAL OPPORTUNITIES BEYOND THE CURRICULUM(무한한 기회, 교실 울타리 저 너머로!)
- 교내에서 제공되는 뛰어난 기회와 더불어 최고 수준의 CCA 및 브라이언트 제공
 - 현장체험학습 및 외부 방문 기회의 균형 및 전반적인 수준 향상, 이를 통한 교과과정 및 기회 강화
 - 스포츠 프로그램 수준 전반적인 향상
 - 학교가 성장함에 따라 수요를 반영하여 기존보다 봉사활동의 수준 및 기회 향상
- EXCEPTIONAL LEADERSHIP AND GOVERNANCE AT THE HEART OF NLCS JEJU(NLCS JEJU의 핵심이 되는 탁월한 리더십 및 거버넌스)
- 확인된 주요 분야를 우선으로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 운영
 - 고위급, 중간급 리더십 강화 및 개발
 - 학생 리더십 강화 및 개발
 -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기존 우수 사례에 부합하고, CIS 및 COBIS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NLCS Jeju 경영위원회 및 파트너 JDC/JEINS의 거버넌스 발전
 - 통학학생 및 기숙학생에 대한 생활지도팀의 효과적인 전략적 리더십 및 관리 확보 (2021년 추가)
 - 곧 부임할 교수학습담당 교감(VP Academic)이 효과적인 전략적 리더십과 관리 역량을 제공하여 교수학습을 보장하고 강화시키며, 관련 부서에서 교내 우수 사례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2022년 추가)
 - 교직원 및 재학생의 의견과 관점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어떠한 방식으로 향후 실행 계획을 세울지,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마련하는 데 있어 의견을 제시한 교직원 및 재학생에게 어떻게 피드백 할 것인지 등 리더십팀의 전략 수립(2022년 추가)
- A VIBRANT AND SUSTAINABLE DAY AND BOARDING SCHOOL RECOGNISED AS A WORLD LEADER(전 세계를 선두하는 활기차고 지속 가능한 통학/기숙학

교로 자리매김)

- 학교의 요구사항 및 재학생 수 변동에 발맞추어 지속적인 캠퍼스 개발/발전 프로그램 시행
- 학업 및 학생생활지도, 세이프가딩(학생안전보호) 측면에서 학교의 우선 순위를 뒷받침하는 IT 전략 시행
- 높은 수준의 기숙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기숙학생 수 증가를 위한 전략 시행 및 완수 (기존 전략을 완료하고, 2021년 8월부터 새로운 구조 아래 신규 전략 시행)
- 마케팅 & 커뮤니케이션 부문 강화를 통해 NLCS Jeju의 명성 강화 및 신입생 입학 지원, 재학생 이탈 방지
- NLCS Jeju 학생의 역량이 학교의 기대 수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입학 절차 및 규정 마련
- 세이프가딩(학생안전보호)을 NLCS Jeju의 중심에 두고, 관련 정책 및 절차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

○ NLCS JEJU EMBRACES INTERNATIONAL MINDEDNESS AND IDENTITY(NLCS JEJU 글로벌 마인드와 정체성 포용)

- 국제주의와 글로벌 네트워킹 독려 및 증진
- 국내 및 세계 무대에서 NLCS Jeju의 10주년 기념 (완료)
- NLCS Jeju 공동체 화합 강화 및 2022년부터 다양성 존중 강조
- ONLJ 동문 네트워크 발달을 통해 학교와 재학생을 지원하고, NLCS Jeju 졸업생이 이룬 결실과 기여한 바를 세계에 널리 알림
- NLCS Jeju 다양한 환경 및 생태학 프로젝트와 NLCS Jeju 전략 간의 일관성 있는 연계 및 NLCS Jeju 발전 계획에 반영(2021년 추가)
- 학부모 전체가 학교 생활에 동참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학교가 학생을 뒷받침하기 위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구조 개발(2022년 추가)
- NLCS Jeju가 다양성 및 평등성, 포용성에 기반을 두고 시행한 초기 작업을 토대로 새로운 전략 수립 및 구현(2022년 추가)

○ A WORLD CLASS CREATIVE CENTRE OF EXCELLENCE IN THE ARTS(예술 분야에서 세계 수준의 예술 창작 센터로 발돋움)

- 탁월한 예술성 및 모든 영역에서의 창의성 신장을 위한 학교 전체 전략 개발
-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모든 학생들에게 최고 수준의 예술 활동 경험 제공

- 교내 PAC(공연예술센터)를 주축으로 재학생 및 다양한 관중이 참여하는 다양한 예술 경험 제공
- 다양한 수단을 통해 보다 더 효과적인 의사소통능력을 기르고, 발표에 필요한 자신감 고양

■ 학비

○ 2023-24/ 수업료

- 원화(KRW)와 미화(USD)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가지 모두 납부해야 함

* 일시납일 경우 전체 학비의 2.0% 할인

<표 III-11> NLCS Jeju 학비

학년	연간		일시납		1차 납입금 (50%)		2차 납입금 (25%)		3차 납입금 (25%)	
	KRW	USD	KRW	USD	KRW	USD	KRW	USD	KRW	USD
Junior(R)	13,134,220	11,088	18,751,530	10,866	9,567,110	5,544	4,383,550	2,772	4,383,550	2,772
Junior (Y1-Y6)	21,259,450	12,327	20,834,260	10,080	10,629,720	6,164	5,314,860	3,082	5,314,860	3,082
Middle (Y7-Y9)	22,260,500	12,905	21,815,290	12,647	11,130,250	6,453	5,565,120	3,226	5,565,120	3,226
Upper (Y10-Y11)	25,311,720	14,669	24,805,480	14,376	12,655,860	7,335	6,327,930	3,667	6,327,930	3,667
Sixth Form (Y12-Y13)	26,822,020	15,540	26,285,470	15,229	13,411,010	7,770	6,705,500	3,885	6,705,500	3,885

자료 : <https://korean.nlcsjeju.co.kr/>, 입학 페이지

○ 2023-24/ 기숙사비

- 기숙사비는 원화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납부 방식은 일시납과 3회 분할납부 중 선택가능하며 일시납을 선택할 시 2.0%할인
- 식비는 급식업체에서 별도로 직접 청구
- 학기 중 입소 시, 입소 희망 일이 매 학기의 중간방학 시작일 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학기 분의 전액을, 중간방학 시작일 이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학기 분의 50%를 납부

<표 III-12> NLCS Jeju 기숙사비

학년	연간	일시납	1차 납입금 (50%)	2차 납입금 (25%)	3차 납입금 (25%)
Junior weekly Boarder (Y3-Y6)	11,812,290	11,576,040	3,937,036	3,937,036	3,938,217
Junior (Y3-Y6)	13,781,020	13,505,390	4,593,214	4,593,214	4,594,592
Middle (Y7-Y9)	15,950,380	15,631,370	5,316,262	5,316,262	5,317,857
Upper (Y10-Y11)	15,950,380	15,631,370	5,316,262	5,316,262	5,317,857
Sixth Form (Y12-Y13)	16,338,510	16,011,730	5,445,625	5,445,625	2,557,259

자료 : <https://korean.nlcsjeju.co.kr/>, 입학 페이지

○ 환불

- 학교에 서면으로 제출되고 승인된 사유에 한하여 다음 표의 항목 및 기준에 의하여 환불

<표 III-13> NLCS Jeju 환불규정

환불 사유 발생일	항목(수업료와 기숙사비)			
	TERM 1	TERM 2	TERM 3	비율
직전 학사년도 2학기 종료일 전	○	○	○	100.00%
직전 학사년도 3학기~하계 방학 중	X	○	○	66.66%
1학기 중	-	X	○	33.33%
2학기 중	-	-	X	0.00%

환불 사유 발생일	항목(통학 차량비)
학기 시작 전 (서면 요청일 기준)	전액 환불
학기 시작 후 (전환일 기준)	환불 불가

○ 할인

- 본교에 2자녀 이상 재학하고 있는 가정에 대하여 할인혜택 부여
 - * Reception-year2 : 혜택 없음
 - * Year3-Year13 : 각 학기 기숙사 비의 6% 할인

■ 입학절차

○ 2023-2024학년도 입학 가능 학년

<표 III-14> NLCS Jeju 입학 가능 학년

	Overseas or International	Korean Local School	현재 학년 (2022.01. 기준)
Reception	01.09.2018~31.08.2019	01.01.2018~31.12.2018	N/A
Year 1	01.09.2017~31.08.2019	01.01.2017~31.12.2017	N/A
Year 2	01.09.2016~31.08.2019	01.01.2016~31.12.2016	N/A
Year 3	01.09.2015~31.08.2019	01.01.2015~31.12.2015	초1
Year 4	01.09.2014~31.08.2019	01.01.2014~31.12.2014	초2
Year 5	01.09.2013~31.08.2019	01.01.2013~31.12.2013	초3
Year 6	01.09.2012~31.08.2019	01.01.2012~31.12.2012	초4
Year 7	01.09.2011~31.08.2019	01.01.2011~31.12.2011	초5
Year 8	01.09.2010~31.08.2019	01.01.2010~31.12.2010	초6
Year 9	01.09.2009~31.08.2019	01.01.2009~31.12.2009	중1
Year 10	01.09.2008~31.08.2019	01.01.2008~31.12.2008	중2
Year 11	01.09.2007~31.08.2019	01.01.2007~31.12.2007	중3
Year 12	01.09.2006~31.08.2019	01.01.2006~31.12.2006	고1
Year 13	01.09.2005~31.08.2019	01.01.2005~31.12.2005	고2

자료 : https://korean.nlcsjeju.co.kr/입학_페이지

○ 입학지원

- 모든 지원자는 NLCS Jeju 온라인 입학 지원 양식을 등록
- 모든 지원자는 해당 입학 학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웹사이트에 게재된 필수 서류를 제출
 - 지원자 여권 사본
 - 지원자 컬러 반명함판 사진
 - 학부모 주민등록등본 (내국인인 경우)
 - 학부모 여권 사본
 - 외국인 등록증 (내국인이 아닌 경우)
 - 최근 성적표 (리셉션 및 1학년 지원자 제외)
 - 최근 생활기록부 (리셉션 지원자 제외)
 - 서류가 국문일 경우 영어 번역 공증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모든 지원자는 입학 전형료를 납부 (현재 400,000원, 환불 불가)
- 지원서는 입학 가능 시점에 맞춰 선착순으로 접수

- 모집 인원은 수시 변동되므로, 지원서 작성 혹은 전형료 납부 이전에 입학사무처로 연락
- 입학 지원서 접수 후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서 추천서를 제출(Reception 및 Year 1 학년 지원자 제외)

○ 입학 지원서 접수 시작 일자

- Year 3 학년부터 상위 학년- 입학 지원서 접수는 입학하기 전 학사년도 8월부터 5월 말일까지 가능하며 공석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접수 기간이 연장 되어 접수가 가능
- Reception, 1, 2 학년- 입학 지원서 접수는 입학하기 전 학사년도 1월부터 시작되며 2월 말일까지 가능

○ 입학 시험

- 장소와 일자
 - 입학 시험 일자는 웹사이트에 사전 공지
 - 지원자는 등록 후 선호하는 입학 시험 일자를선택할 수 있으며, 해당 일자에 응시가 어려울 경우 입학 사무처에서 일정을 조정 할 수 있음
- 국내 거주자 - 리셉션~2학년
 - 8월 입학의 목표로 하는 모든 지원자는 정해진 입학 시험 당일 당사자 참석이 필수
 - NLCS Jeju 는 높은 숫자의 입학 지원서가 접수 될 시 일찍 입학 시험을 시행 할 수 있음
 - 학사년도 중도 입학(11월, 1월, 4월)을 목표로 하는 지원자는 입학 시험 일자 별도 지정
- 국내 거주자 (03~12학년)
 - 모든 입학 지원자는 1차 시험을 캠퍼스에서 응시
 - 1차 시험 응시 후 합격선을 넘은 지원자들은 NLCS Jeju 에서 2차 시험을 응시하게 되며 온라인 면접 및 나머지 시험을 완료
 - 2차 시험은 합격선을 넘은 지원자들만 온라인 면접
- 해외 거주자
 - 한국에서 진행되는 입학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지원자는 온라인 및 현재 재학 중인 학교 등 인가된 시험 장소에서 평가(시험과 면접)
- 입학 시험 평가 기준
 - 평가 관한 모든 세부사항은 온라인에 공지

<표 III-15> NLCS Jeju 입학시험 항목

리셉션	실제 수업 참여 평가 BASE 시험 (컴퓨터 사용)
1학년 - 2학년	실제 수업 참여 평가 영어 시험 수학 시험
3학년	CAT4 시험 (컴퓨터 사용) 영어 시험 (컴퓨터 사용) 면접
4학년 - 5학년	CAT4 시험 (컴퓨터 사용) 수학 시험 (컴퓨터 사용) 영어 시험 (컴퓨터 사용) 면접
6학년 - 10학년	CAT4 시험 (컴퓨터 사용) 수학 시험 (컴퓨터 사용) 영어 EAL 평가 (컴퓨터 사용) 면접
12학년	CAT4 시험 (컴퓨터 사용) 수학 시험 (컴퓨터 사용) 영어 시험 (지필 시험) 영어 EAL 평가 (컴퓨터 사용) 면접

3. BHA(Branksome Hall, Asia)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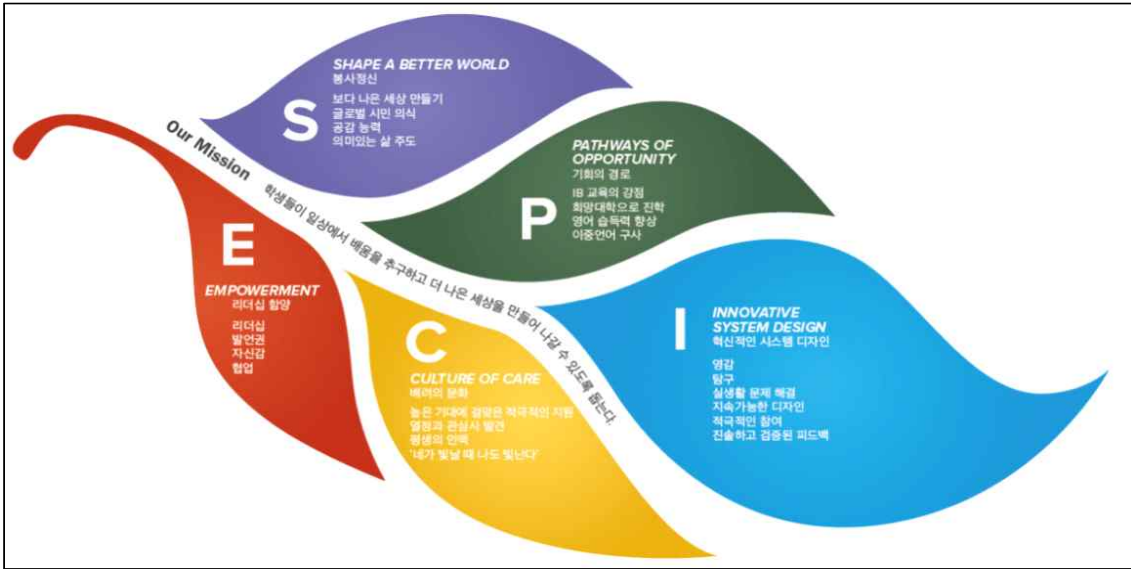
- 국제기구 인증
 - WASC(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 CIS(Council of International Schools)
- 개교일 : 2012. 10
- 커리큘럼 : International Baccalaureate
- 운영 형태: 사립
- 학급 수 : 49 학급
- 학생 수 : 991명
- 교원 수 : 154명
- 직원 수 : 56명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통계포털, 2022.

■ 비전 및 미션

- 비전
 - 글로벌 마인드를 지닌 미래의 리더를 양성하는 최고의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한다.
- 미션
 - 학생들이 일상에서 배움을 추구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 브랜섬홀 아시아 5대 교육철학(SPICE Leaf)



<그림 III-5> 브랜섬홀 아시아 5대 교육철학

■ 학비

○ 2023-2024 수업료

<표 III-16> 브랜섬홀 아시아 수업료

DIVISION	수업료							
	연간		일시납		1학기		2학기	
학년	KRW	USD	KRW	USD	KRW	USD	KRW	USD
JK PREP-G5	20,188,000	13,126	19,784,000	12,863	10,094,000	6,563	10,094,000	6,563
G6-10	22,724,000	14,586	22,270,000	14,294	11,362,000	7,293	11,362,000	7,293
G11	23,266,000	16,044	22,801,000	15,723	11,633,000	8,022	11,633,000	8,022
G12	24,714,000	16,044	24,220,000	15,723	12,357,000	8,022	12,357,000	8,022

○ 2023-2024 기숙사비

<표 III-17> 브랜섬홀 기숙사비

DIVISION	전일기숙사프로그램		
	연간	1학기	2학기
학년	KRW	KRW	KRW
G6-10	19,964,000	9,982,000	9,982,000
G11-12			

■ 입학절차

○ 전형 순서

- 1. 입학 설명회 및 온라인 설명회 등 을 통한 학교 정보 수집
- 2. 지원서 작성(온라인)
- 3. 입학전형료 납부(40만원, 환불불가)
- 4. 필요 구비 서류 제출
- 5. 학생 인터뷰와 입학평가 전형 진행
- 6. 전형결과 통보
 - * 기숙사는 여학생 전용으로 Grade 6 지원자 부터 신청가능.
 - * 남학생들은 JK Prep - Grade 7 지원가능하며, 통학생으로 지원 가능. (남학생 기숙사 없음)

○ 입학시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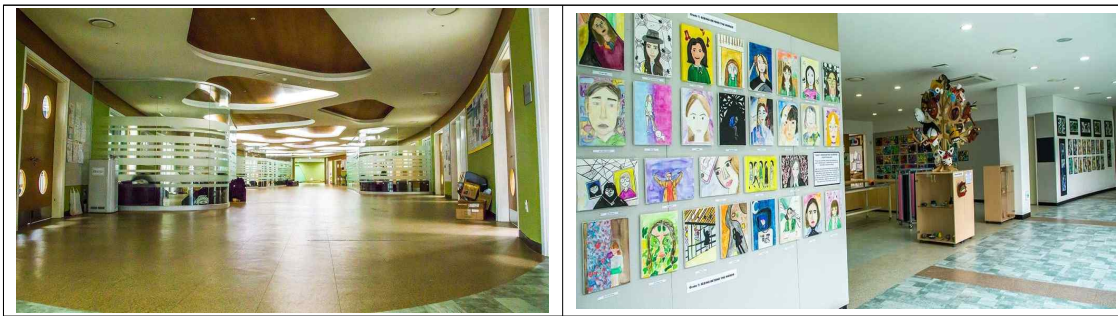
지원 학년	입학시험 (2022 년 기준)
JK Prep, JK, S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그룹 활동을 통해 학교생활에 대한 준비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태도, 신체-행동 발달, 사회성, 집중력, 아이컨택, 언어 습득력, 숫자의 개념 등 관찰 평가
Grades 1 -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 입학 평가 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읽기, 쓰기, 대화하기), 수학문제풀이, 국어(모국어) 평가 • 교사의 도움 요청 가능, 교실 내에서의 적응 가능성을 관찰 평가
Grades 3 -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 입학 평가 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P 테스트 (영어 & 수학) • 영어 글쓰기 • 국어(모국어) 평가 • 1:1 학생 영어 대화하기
Grades 6 -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 입학 평가 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P 테스트 (영어 & 수학) • 에세이 쓰기 (영어 & 한국어); 각 언어별 주제 상이 • 1:1 학생 영어인터뷰 • 기숙사 지원자는 필요 시 추가 인터뷰 진행

<그림 III-6> 브랜섬홀 아시아 입학시험 절차

■ 시설 현황

○ 학교 시설

- 총 면적 95,000m²
- 교육시설
 - 썬큰 가든(Sunken garden) 즉 트랙 정원과 마당, 활동 테라스와 연결되는 가스, 물, 연기 후드를 갖춘 8개의 과학 실험실
 - 4개의 대규모 아트 스튜디오, 디자인 메이커 스페이스와 4개의 오픈 디자인 실습실



<그림 III-7> 브랭섬홀 아시아 학교시설

- 공연 예술 센터

- 음향적으로 세련된 강당, 넓은 교실, 연습실, 대형 리사이틀룸, 블랙박스 극장, TV 스튜디오, 오디오 녹음 스튜디오, 댄스 스튜디오



<그림 III-8> 브랭섬홀 아시아 공연 예술 센터

- 체육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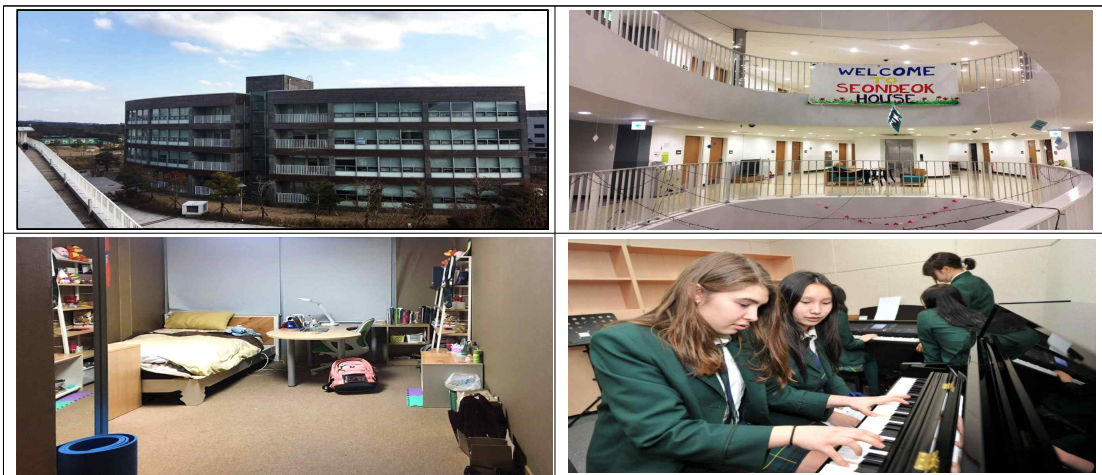
- 50m 올림픽 수영장, 골프 연습장 및 퍼팅 그린, 테니스 코트, 축구 경기장, 하키장, 웰빙 센터, 체육 단련실, 요가실



<그림 III-9> 브랜섬홀 아시아 체육시설

- 기숙사

- 모두 4개의 기숙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에인슬리(Ainslie), 신사임당(Shin Saimdang), 선덕(Sundeock), 셸본(Sherbourn) 등 여성위인들의 이름으로 설립됨
- 지도학습시간을 위해 주5회 기숙교사 배치, 24시간 이용 가능한 메디컬센터, 응급치료실, 식당, 피트니스룸, 체육관, 요가룸, 실내수영장, 스포츠피드, 메디컬센터와 직접 연결 가능, 모든 기숙사는 브랜섬홀 아시아 웰니스센터와 근접해 위치
- 최신식 보안 시스템, 보안 직원 및 대피 시설, 보안 및 학습 시설 사용을 위한 개인 ID 및 출입카드 배포
- 야외 활동 및 공항 이동을 위해 브랜섬홀 아시아 학교버스 이용 가능, 교외 활동, 명상, 학업지원, 리더십 기회 그리고 친목 이벤트와 같은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그림 III-10> 브랜섬홀 아시아 기숙사

자료: 중앙일보, 기숙사 생활의 두 얼굴... 제주 국제학교의 경우, 2017,03,12.

4. SJA Jeju(ST. Johnsbury Academy Jeju)



<그림 III-11> SJA Jeju

■ 개요

- 국제기구 인증명: NEASC(New England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 개교일 : 2017. 10
- 커리큘럼 : Advanced Placement
- 운영 형태 : 사립
- 학급 수 : 51학급
- 학생 수 : 1,030명
- 교원 수 : 166명
- 직원 수 : 73명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통계포털, 2022.

■ 학교 비전 및 이념

- 지성과 인격을 두루 갖춘 인재양성
 - 인정 많은 인격체(Compassionate Individual)
 - 열정적인 학습자(Passionate Learners)
 - 글로벌 시민(Global Citizens)
- 교육 이념



<그림 III-12> SJA Jeju 교육이념

자료: <https://www.sjajeju.kr/>

■ 시설 현황

- 학교 시설
 - 총 면적 102,171 m²
 - 도서실, 시청각실, 체육관, 강당, 도서실, 수영장, 체험교실, 헬스장, 테니스장, 농구장, 풋살장
 - 24시간 간호사 상주
- 기숙사
 - 남학생동, 여학생동, 2인1실로 운영, 미니 도서관, 레크레이션룸



<그림 III-13> SJA Jeju 시설현황

자료: <https://www.sjajeju.kr/>

■ 입학절차

○ 접수기간

2023-24 School Year 2023-24 학년도	Grades 지원학년	Deadlines 지원 마감일
1st Round Admission 정시모집	PK3 ~ 11th Grade 만 3세~ 11학년	November 01, 2022 ~ December 16, 2022 2022년 11월 1일 ~ 2022년 12월 16일
Rolling Admission 수시모집	PK3 ~ 11th Grade 만 3세~ 11학년	December 17, 2022 ~ Until Full Capacity 2022년 12월 17일 ~ 정원 충원 시까지

※ Application deadlines are subject to change at the school's discretion and are to be noticed via email.

접수 일정은 학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이메일 또는 기타 방법으로 사전 공지하겠습니다.

※ 1st-round applicants with incomplete applications will not be assessed and automatically considered for Rolling Admission.

정시모집 접수 기간에 지원하였으나 서류가 미비한 경우, 자동으로 수시모집으로 간주됩니다.

<그림 III-14> SJA Jeju 입학접수기간

자료: <https://www.sjajeju.kr/>

○ 필요서류

- 지원자의 ‘입학 포트폴리오/지원서’ 는 SJA Jeju가 학생의 입학 심사를 위해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 양식, 과업의 집합체를 의미
- 지원자는 입학 포트폴리오/지원서를 반드시 입학 심사 전 기한 내에 완성하여 제출

지원서 & 증명사진	전학년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여권사본(외국인에 한함)	전학년
학부모 설문지	전학년
전형료	전학년
수업참관	PK4-5 학년
성적표 발급 요청서	2-11 학년
최근 2년 간의 성적증명서 또는 생활기록부	2-11 학년
담임 선생님 추천서	2-6 학년
수학 선생님 추천서	7-11 학년
영어 선생님 추천서	7-11 학년
개인 추천서	7-11 학년
MAP 시험	3-11 학년
심층면접	전학년

<그림 III-14> SJA Jeju 필요서류

자료: <https://www.sjajeju.kr/>

■ 학비

- 수업료는 원화분과 미화분 모두 납부해야 하며 미납 학비가 있는 학생들은 수업에 참가 할 수 없음 (원화 70% / 미화 30%)
- 다양한 과외 활동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청구

<표 III-18> 2023-2024 Annual Tuition & Boarding Fee 연간 수업료 및 기숙사비

학년	Annual Tuition 연간학비
Early Childhood 유치부	KRW 22,366,000 + USD 8,335
Elementary School 초등부	KRW 22,366,000 + USD 8,335
Middle School 중등부	KRW 23,337,000 + USD 8,698
High School 고등부	KRW 24,311,000 + USD 9,060
Boarding 기숙사	KRW 15,046,000

<표 III-19> 2023-2024 Other Fees 기타 비용

구분	비용	비고
입학 전형료	KRW 400,000	환불 불가
입학 등록비	KRW 5,000,000	최초 등록시 1회 납부
기숙사 등록비	KRW 500,000	
국제 학생비	KRW 3,450,000	
재입학등록비	KRW 2,500,000	환불 불가
스쿨버스비	KRW 3,500,000	연간 납부

5. 채드윅국제학교

■ 개요

- 국제기구 인증명 : WASC(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 개교일 : 2010. 09.07
- 개설과정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97번길 45
 - * 송도국제도시에 위치
- 커리큘럼 : International Baccalaureate
- 로고 및 마스코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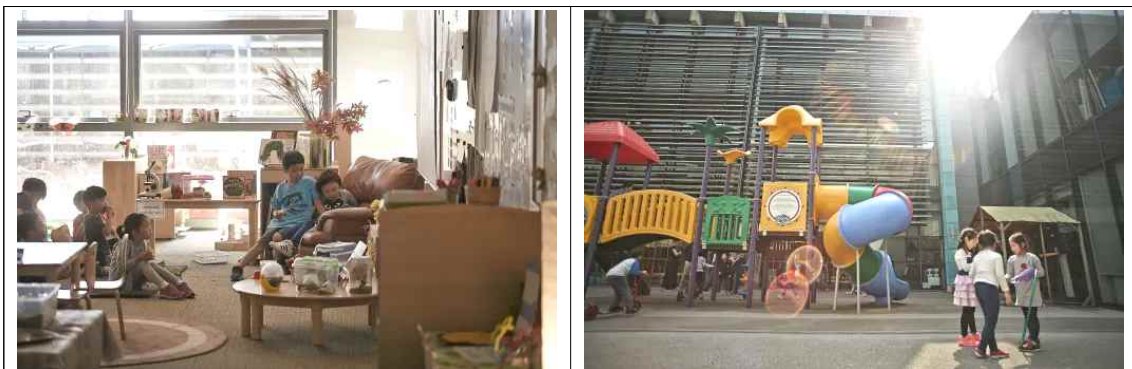


<그림 III-15> 채드윅국제학교 로고 및 마스코트

자료 : <https://www.chadwickinternational.org/>

■ 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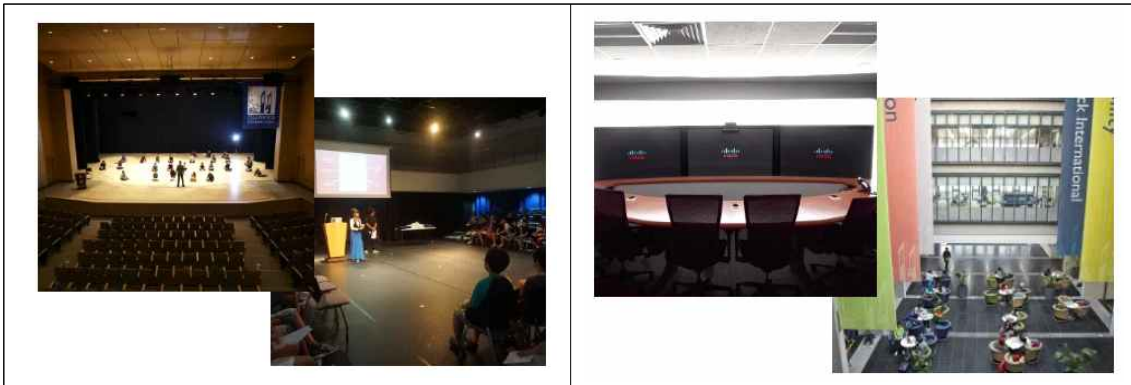
- 마을 학교 건물
 - VS 도서관, VS Makerspace 스튜디오, 자체 카페테리아, 관리 사무실



<그림 III-16> 채드윅국제학교 마을 학교 건물

○ 중학교 및 고등학교 건물

- 로보틱스 룸, MS/US 카페테리아, Cisco Telepresence Room, TV 스튜디오, 프로젝트실, 메인 극장, 블랙 박스 극장, 체육관 및 아쿠아틱 센터, MS/US 디자인 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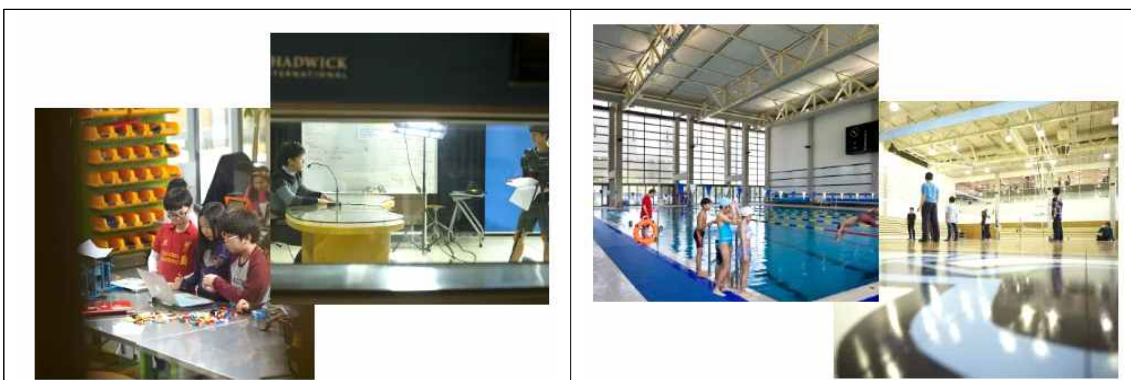
<그림 III-17> 채드윅국제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건물

○ 학업 시설

- 4개의 포켓 놀이터(유아용), 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두 교실 사이의 “협업실 “, Robotics Room, Makerspace, Design Labs, 전문 TV 스튜디오와 방송국

○ 체육 시설

- 25개의 체육관(실내 암벽 등반 벽 포함), AC 밀란의 훈련장과 동일한 인조 잔디로 설계된 운동장, 육상 트랙, 테니스 코트, 온수 수영장이 있는 실내 수중 센터, 댄스 스튜디오 및 웨이트 트레이닝 룸



<그림 III-18> 채드윅국제학교 체육 시설

○ 예술 시설

- 메인 극장, 블랙박스 극장, 미술 스튜디오, 텔레비전 스튜디오, 전문 음악실

○ 야외공간

- 챌린저 코스, 축구장, 트랙 29.25m 높이의 종탑, 철학자 잔디밭 및 원형 극장, Rock Garden



<그림 III-19> 채드윅국제학교 야외공간



<그림 III-20> 채드윅국제학교 캠퍼스 맵

■ 학비

○ 등록금

<표 III-20> 채드윅국제학교 2023-2024 등록금

학년	비용
빌리지 스쿨(PK-G5)	KRW 24,940,000 + USD 14,150
중학교 (G6-G8)	KRW 26,820,000 + USD 15,200
고등학교 (G9-G12)	KRW 29,350,000 + USD 16,650

○ 기타비용

<표 III-21> 채드윅국제학교 2023-2024 기타 비용

구분	비용
입학 전형료	KRW 400,000
입학금 (입학계약서 제출 시 납부)	KRW 1,000,000

6. 대구국제학교

■ 개요

- 국제기구 인증명 : WASC(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 개교일 : 2010. 08.13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50길 22
- 커리큘럼 : Advanced Placement

■ 비전 및 목표

- 사명선언문
 - DIS의 사명은 학생들이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전하고 양육적인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글로벌 사회의 성공적인 공헌 구성원이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 Students attending DIS will strive to acquire the following schoolwide learner outcomes: **We are DIS**
 - Determined (결정)
 - Intellectual (지적)
 - Successful (성공)

■ 시설 현황

- 학교시설
 - 총 면적 17,815m²
 - 30개 이상의 강의실(스마트보드 설치), 프레젠테이션 홀, 야외 놀이터, 유아 센터 건물, 도서관/정보 센터, 기술 연구실, 식당, 비디오 제작 스튜디오, 체육관, 야외 테니스 코트, 야외 농구 코트, 인조 잔디 운동장
 - 스쿨버스 운영



<그림 III-21> 대구국제학교 학교시설

○ 기숙사

- 5층 기숙사 15인실(grade 5 부터 120명 수용)
- 4개층 에는 15개의 주거실, 직원실, 학습실, 세탁실
 - 1층에는 대형로비, 게임룸, 주방 피트니스 센터
 - 각 방에 싱글 침대 2개, 옷장 2개, 24시간 보안서비스에 의해 보호

■ 입학절차

○ 입학 단계

- 온라인 지원서 작성
- 입학시험 응시
- 최종결과 발표

○ 지원 학년

- Korean Schools ▶ DIS
 - 한국학교에서 재학 중인 학년을 이수하지 않고 본교로 전학 오는 경우, 재학 중인 동일 학년으로 입학
- International/US Schools ▶ DIS
 - 미국 학제(8/9월 시작, 5/6월 종료)를 따르는 학교에서 본교로 전학 오는 경우, 학년이 자동으로 연계
- 유치원 프로그램
 - 미취학아동의 경우 생년월일뿐만 아니라 시험/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학년 결정되며, 만 6-5.5세 학생들은 유치부에 해당

○ 지원 자격

- Non-Korean Citizens
 - 외국국적 학생은 연중 상시 모집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라 한국국적을 보유한 이중국적자는 한국인으로 처우
- Korean Citizens
 - 한국국적 학생은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입학후보자 대상으로 추가 선발
- Additional 10% Korean
 - 대구광역시 외국교육기관 내국인 학생 추가 입학비율에 관한 규칙(대구광역시 교육규칙 제652호, 2014.01.01 공포)에 따라 총 68명까지 추가 선발이 가능
 -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학기 중 상시 지원이 가능

<표 III-22> 한국인 지원 자격

연번	대상
1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조례」에 의거 대구광역시에 유치한 내·외국인 투자기업 직원 자녀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원에 관한 특별법」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에 한함 등에 의거 대구광역시로 이전하는 공공·연구기관·기업의 직원 자녀	

<표 III-23> 지원구비서류

지원학년	온라인 입학지원서	지원자 사진, 여권/등본	생활기록부/ 성적표	수상기록/ 공인영어점수	교사추천서 (본교양식)
K 유치부	○	○	△	△	X
G1 - G5 초등부	○	○	○	△	X
G6 - G12 중고등부	○	○	○	△	○

○ : Mandatory 필수제출, △ : Optional 선택제출, X : N/A 해당사항없음

○ 지원자격

- 지원서 접수 일정이 끝난 후, 안내에 따라 희망하는 입학시험 응시일을 신청하고 응시료 250,000원을 납부
- 다음 학년도에 재응시하는 입학후보자는 50,000원의 재응시료를 납부하며 모든 응시료는 환불 불가
- <Kindergarten and G1 유치부 및 1학년>
 - Interview

- * Conversational questions 1:1 영어인터뷰
- Group Observation
 - * Social relations, communication and literacy ability 영어사용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 <G2-G12 2-12학년>
 - Interview
 - * Conversational questions 1:1 영어인터뷰
 - NWEA MAP Test
 - * Academic test of reading 영어사용 및 독해 능력
 - Writing Prompt
 - * Narrative, explanatory and opinion writing prompts 영어작문 (묘사, 설명 및 의견 제시)

■ 학비

○ 수업료 (모두 한화)

<표 III-24> 학비

구분	비용
EARLY CHILDHOOD CENTER (ECC): Kindergarten	20,500,000
ELEMENTARY SCHOOL (ES): Grades 1 - 5	22,100,000
MIDDLE SCHOOL (MS): Grades 6 - 8	24,200,000
HIGH SCHOOL (HS): Grades 9 - 12	28,400,000

<표 III-25> 기타비용

구분	내용	비용	
신청 수수료	· 필수 선불 · 환불 불가	처음	250,000
		탈환	50,000
입장료	· 모든 신입생에 대한 등록시 일회성 및 필수 · 환불 불가	3,000,000	
점심식사 요금	· 선택적 · 수수료는 학년에 따라 다름	미정	
통학버스 요금	· 선택적 · 왕복만 가능 · 환불 가능 (*스쿨버스 환불 정책당)	미정	
기숙사 요금	· 5-12학년 · 선택적 · 룸 & 보드 · 환불 가능(수업일수를 기준으로 비례 배분)	8,200,000	
졸업비	· 이 비용은 졸업장 비용과 졸업식 비용을 포함 · 12학년 한정 · 필수 · 수수료는 2차 결제 일정까지 지불 · 환불 불가	500,000	

○ 환불 정책

- 수업료는 위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환불됨
- 환불은 학생의 마지막 등교일로부터 2주 이내에 DIS 환불 요청 양식과 함께 요청
- 미결제 금액은 성적 증명서가 공개되기 전에 정산되어야 함
- 환불 일정은 자발적 및 비자발적 인출 모두에 적용.
- 불가항력으로 인해 학생이 학교를 자퇴하게 되는 경우 해당 학년도에 이미 지불한 수업료 및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음
 - 불가항력은 전쟁, 내전, 노동 불안 또는 극한 날씨와 같이 예상하거나 통제할 수 없고 학교의 재정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 또는 결과로 정의됨
 - 이 정책은 학교의 재정적 안정을 보장하고 불가항력 사건이 지나간 후에도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자원을 제공하는 데 필요함
- 환불은 일반적으로 한국 원화로 이루어짐
- 환불은 부모 또는 공인 대리인에게 송금되며 이 정책은 가족과 학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

7. 국제학교 사례 관련 인터뷰 결과 및 시사점

1) 인터뷰 결과

■ 인터뷰 개요

- 인터뷰 기관 : (주)제인스
- 인터뷰 일시 : 2023. 7. 1.
- 인터뷰 대상 : (주)제인스 손봉수사장(제주도 3개 학교 운영법인)

■ 주요 인터뷰 내용

- 제인스는 3개의 학교 운영법인이지만, 교사채용, 교과서 채택을 비롯한 학생선발 등 교과과정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못하고 있다.
- 교원 월급 주고, 시설 유지보수하고 이런 돈만 대주고 있다.
- 당초 제주에 진출하기를 꺼려했던 본교에서는 제주국제학교 운영으로 수업료의 4%를 로열티로 받고 교사 일자리 확보 등 여러가지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자, 제주모델을 글로벌 표준으로 삼아 다른 아시아국가들에도 진출(태국)했으며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 제주국제학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이 전무하다.
- 지나치게 높은 수업료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주국제학교 모델이 지속가능할지 장담할 수 없다.
- 사실상 귀족학교가 되버린 제주국제학교 모델이 다른 지역에 도입할 경우 지역인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 제주 모델만이 정답이 아니므로, 정부 교육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자사고, 자율화 학교, 교육특구내 국제학교 등이다.

2) 시사점

■ 제주국제학교(4개교) 성공 요인

- 정부 국책사업으로 출발

-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출발
- 제주도의 국제화(외국인 정주환경 조성) 및 당시 사회문제로 떠오른 해외유학 수요의 국내 소화를 사업목표로 설정
- 계획수립과 추진과정을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진두지휘 (연간 4회 이상 총리가 회의주재)

○ 대통령의 관심표명

- 이명박 대통령이 “외교·국방을 제외한 모든 규제를 풀어 싱가포르 수준의 국제자유 도시 조성, 발상의 전환” 지시(2008년)
- 수차례의 특별법 개정을 거쳐 480여 개 조항의 제주특별법 완성

■ 국무조정실 제주사무처의 적극적인 역할

- 총리실·기재부를 주축으로 기재부·교육부·국토부·행자부·제주도가 수행할 제도 정비 및 재정확보 업무를 일괄 추진
- 국토부는 산하에 공공기관(JDC)을 설치하여 재원마련 및 재정 지원
- 교육부는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내국인 쿼터 폐지 △국내학력 인정 △과실송금까지 가능한(이른바 영리학교) 세계적 명문 국제학교 유치 등 혁신적 제도기반 마련
- JDC는 유명 교육컨설턴트를 고용, 세계적 명문학교 유치활동 전개 및 SPC 형태의 학교운영법인 설립
- 제주도는 자연보호지역(곶자왈공원) 내에 최적의 부지 제공
- 현 여건상 강원도·강릉시의 ‘제주모델 벤치마킹’에는 한계가 있음

■ 인천 송도의 성공요인

- 학생유치를 위한 배후도시 및 부지인프라 등 입지여건 우수
-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로 일정한 외국인 입학수요 확보 가능
- 광역단체장의 강력한 리더십과 지역사회의 우호적인 여론
- 당장은 실현하기 어렵더라도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임

제3절 기존 국제학교 설립과정 관련 기사검토

1. 제주도 및 타시도

■ 2003.06.19. 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초안 마련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0034413?sid=102>

제주도는 관광허브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개선을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초안을 오는 19일 밝혔다. 개정초안은 급변하는 국내외 투자환경에 부응하고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세제 개선, 청정환경 유지, 관광 활성화, 도민 이익 확대, 재정 확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료: 자료 : 문화일보(2003.06.1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0042338?sid=102>.

■ 2003.10.02. 경제特區 교육시장 전면개방.. 외국학교 분교설립 허용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0649816?sid=101>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국제자유도시와 경제자유구역의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요건과 내국인 입학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기본계획 및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발표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경제특구에 들어설 학교는 자체 학교건물(교사)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임차해도 된다. 또 결산 시 잉여금의 해외송금도 제한없이 허용된다. 선진국의 명문 학교 유치를 위해 법인세 소득세 관세 등 각종 세제상 혜택이 주어지고 국내 대학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학술연구비도 지원된다.

자료 : 한국경제(2003.10.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0649816?sid=101>

■ 2004.07.06. 제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각의 통과

건설교통부는 소득세 등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외국인학교에 내국인도 다닐 수 있도록 입학자격을 완화하고 국제전문가를 양성하는 국제고등학교에 임용되는 외국인 교원들의 신분을 보장하기로 했다.**

자료 : 서울경제(2004.07.0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0042338?sid=102>.

■ 2005.08.02. '공영형 국제고' 제주 설립 추진

제주도에 공영형 자율학교인 국제고등학교와 국제언어, 문화교육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설립한다는 방침 아래 공영형 자율학교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연내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 : 제주일보(2005.08.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4/0000029183?sid=102>

■ 2005.09.21. 제주에 초·중·고 국제학교 세운다

제주도는 21일 정부에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에 제주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하는 내용을 새로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제주국제학교는 외국 대학 입학에 희망하는 국내·외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교육 과정은 미국과정, 영국과정, IB과정(국제공동 대학입학자격), AP과정(미국 대학입학편의제공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자료 : 경향신문(2005.09.21.) <https://www.khan.co.kr/local/Jeju/article/200509211807021>

■ 2005.11.08.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을 토대로 주력 핵심산업을 육성, 홍콩과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명실상부한 제주국제자유도시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관광·통과 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한해서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국가를 제외하고는 시증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고, 지방공기업에 의한 제주관광진흥공사 설립도 명시, 관광정책 전담조직을 두도록 했다.

자료 : 제주일보(2005.11.0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4/0000034621?sid=102>

■ 2005-12-29 제주 특별법안 행자위 의결, 국회 본회의 통과 기대

국회 행자위는 29일 오후 1시35분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도 행정체제 특별법안, 지방자치법개정안 일부개정안,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에 대해 법안심사 소위가 상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했다. 교육 개방분야에서는 국제학교 설립에서 초중학교는 제외하고 고등학교만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3개법안은 국회 법사위원회로 넘겨졌으며, 3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 노컷뉴스(2005.12.29.), <https://www.nocutnews.co.kr/news/111087?c1=225&c2=236>

■ 2006.02.10.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 국회 통과, 7월 출범

21C 제주 발전전략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이 9일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은 자치분야의 경우 제주도를 단일광역자치단체로 하는 행정구조 특례, 법률안 제출 요청권한 부여, 자치감사체계 확립, 도의원 정수 확대, 교육감 직선제 등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 실시, 특별행정기관 이관 등을 담고 있다.

자료 : 제주일보(2006.02.1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4/0000041046?sid=102>

■ 2010.02.10. 제주 영어도시 국제학교 저학년 입학 허용

○ <https://www.khan.co.kr/local/Jeju/article/201002101522171>

21C 제주 발전전략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이 9일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은 자치분야의 경우 제주도를 단일광역자치단체로 하는 행정구조 특례, 법률안 제출 요청권한 부여, 자치감사체계 확립, 도의원 정수 확대, 교육감 직선제 등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 실시, 특별행정기관 이관 등을 담고 있다.

자료 : 제주일보(2006.02.10.), <https://www.khan.co.kr/local/Jeju/article/201002101522171>

■ 2010.07.19 제주 영어도시 외국사립학교는 밀 빠진 독 ?

정부투자기관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설립되는 해외 유명 학교들의 재정적자를 전액 보전해주시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지역 교육계에서는 JDC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국제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적자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는 것은 특혜라고 반발하고 있다.게다가 앞으로 영어교육도시 진출을 타진하는 해외 사립학교들도 이와 같은 조건의 계약을 요구하면 JDC의 재정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제주도내 교육시민단체 관계자는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외국 학교 유치는 막대한 예산을 갹아먹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자료 : 세계일보(2010.07.19.), <https://www.segye.com/newsView/20100718001010>

■ 2012.05.15. 14:58 제주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 투자진흥지구 활성화 기대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조성중인 제주영어교육도시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민자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요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과 사업계획 적법성 등을 검토했다. 제주도는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 주민공고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에 상정해 심의 고시한다.제주도는 영어교육도시 주거 및 상업시설에서 매년 100억원 이상의 국세 및 지방세수가 발생하고, 지방세 감면기간이 종료하는 2026년부터 매년 197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 : 경향신문(2012.05.15.), <https://www.khan.co.kr/local/Jeju/article/201205151458461>

■ 2012-06-27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달 투자진흥지구 지정

국토해양부는 제주 영어교육도시가 다음 달 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영어교육도시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투자진흥지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가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며, 법인세 취득세 등 조세와 각종 개발 부담금 등을 감면받는다.

자료 : 동아일보(2012-06-27),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20626/47315614/1>

■ 2012.10.22. "국제학교 '일본해' 표기 교과서, 동해 표기 등 방안 모색"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운영법인인 (주)해울은 '일본해' 표기 교과서 사용과 관련해 국제학교 교장과 협의를 통해 동해 표기 등 역사적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22일 밝혔다.(주)해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 또는 사회과부도가 동해와 일본해가 병기돼 있거나 일부 교과서의 경우 일본해로 표기돼 있다"며 "하지만 표기된 명칭과는 별개로 동해로 강의하고 있으며, 국가관 및 역사관을 확립을 위해 교과부 검정 교재로 국어 및 국사 수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 : 뉴스스(2012.10.2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04783917?sid=102>

■ 2012.10.24 법률 근거 없어 외국교육기관 설립 못하는 세종시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7월 1일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출범해 국무총리실과 9부 2처 2청의 정부 부처가 이전하고 있으나 법률적 근거가 없어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이 불가능하다.세종시가 외국기업유치와 글로벌인재육성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인구 50만명의 자족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 뉴스1(2012.10.24), <https://www.news1.kr/articles/866115>

■ 2013.02.11 5단계 제주특별법 개선안 발표...'과실송금'도 포함

2009년 제주특별법 제3단계 제도개선 때도 과실송금을 추진하다 무산된 바 있는 제주도는 국제학교를 운영하는 재단 측에서 과실송금이 허용되지 않아 외국 사학들이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에 근거해 이번 5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시켰다.
이는 영어교육도시 내 현행 비영리법인만 가능했던 외국대학 설립을 영리법인에도 허용하는 내용과 더불어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자료: 제주의소리(2013.02.11.),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25815>

■ 2013.04.22. JDC, 제주영어도시에 공공임대주택 건설 논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영어교육도시에 국제학교 학부모들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JDC는 2017년까지 총사업비 1조7천806억원을 들여 12개 국제학교, 외국인 교육기관, 주거·상업시설 등이 들어선 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강경식 제주도의회 의원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을 전담하는 JDC가 주택사업까지 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대안을 마련하는 등 다른 방안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자료 : 연합뉴스(2013.04.2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6217760?sid=100>

■ 2013.10.16. JDC, 국제학교 로열티로 1200억 지급 약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평갑)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로부터 받은 '제주국제학교 초 수업료 수입액 대비 본교 지급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교 2년간 국제학교 로열티로 50억원을 해외 본교에 지급했다. 국제학교 운영법인 JDC의 자회사 (주)해울이 총자산보다 부채가 161억원이나 더 많아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면서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국제학교 본교에는 50억원이나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JDC 측은 "국제학교 계약은 불공정 계약이 아니라 독점 계약으로 아시아 국가에 다른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로열티를 지급하게 됐다"며 "이런 독점계약으로 오히려 제주국제학교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자료 : 제주의소리(2013.10.16.),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35685>

■ 2013.10.17. 제주국제학교 로열티 50년간 1255억...재협상 필요

이미경(민주) 의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로부터 제출받은 '제주국제학교 총 수업료수입액 대비 본교지급액 현황'에 따르면 제주국제학교들이 계약기간 동안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 노스런던칼리지에이트스쿨(NLCS)에 50년간 780억원, 브랜섬홀아시아(BHA)에 22년간 475억 등 12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 : 베리타스알파(2013.10.17.),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77>

■ 2013.12.13. 제주국제학교 이익 배당 허용할 듯...'학위 장사' 논란 예상

정부가 제주 국제학교의 결산상 잉여금의 배당을 허용하고 운영 자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제학교의 방학 영어 캠프와 민간재산 임차도 허용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야당 의원들로부터 개선을 지적받았던 사항을 강행할 뜻을 내비친데다 국제학교에만 영어캠프 운영을 허용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자료 : 베리타스알파(2013.12.13.),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19197>

■ 2014.01.14 영어교육도시 투자방식 전면 재검토

올해 영어교육도시내 국제사립학교 모집인원이 2000명으로 늘어나고 투자방식이 전면 재검토된다. 정부가 추진중인 '영리법인 국제학교의 과실송금 허용'이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돼 국회를 통과하면 외국 교육기관의 유치에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자칫 민주당·시민사회단체가 과실송금 허용에 따른 공교육 붕괴, 국부 유출 등을 우려해 강력 반발할 경우 민자 유치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자료 : 제민일보(2014.01.14.),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25123>

■ 2014.01.14 제주영어도시 국제학교 부지·건축비 지원 중단된다

김한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은 14일 "지금까지는 영어교육도시에 들어서는 국제학교에 대해 학교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학교 건물 신축비도 모두 지원했으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는 이런 지원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JDC가 국제학교의 부지와 건축비를 전액 부담해 재정 손실이 크기 때문이다.

자료 : 연합뉴스(2014.01.1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6698542?sid=101>

■ 2014.03.11. 제주도교육청, 3년마다 국제학교 평가 실시

제주도교육청은 입법예고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평가 운영 규정'을 확정, 공포했다고 11일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도교육감은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미리 공포해야 한다. 평가는 교육감 소속 국제학교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학교공개정보 등을 이용한 정량평가와 서면평가, 설문조사, 관계자 면담 등의 방법을 이용한 정성평가 방법을 병행해 실시한다.

자료 : 연합뉴스(2014,03,1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6800500?sid=102>

■ 2014.07.30. 제주국제학교도 “도조직개편 반대”…왜?

민선6기 제주도정이 영어교육도시 지원사무소 직제를 폐지하고 본청 조직(담당 사무관급)으로 편입시키려 하자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주민들과 국제학교들까지 반대하고 나섰다.

제주영어교육도시 입주민과 KIS한국국제학교, NLCS제주, Branksome Hall Asia 등은 30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제주영어교육도시 지원사무소 기구 격하 관련한 진정서를 통해 “현 수준의 기구 유지 또는 관련 국장 산하 지원사무소(서기관급 소장) 형태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자료 : 제주의 소리(2014,07,30),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50048>

■ 2014.09.28 제주 국제학교 내국인 100명 중 24명 '강남 출신'

박주선(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제주영어교육도시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현재 노스런던컬리지어트스쿨(NLCS Jeju, 영국)과 브랭섬홀아시아(Branksome Hall Asia, 캐나다), 한국국제학교제주(KIS Jeju)에 다니는 내국인 학생은 총 1778명이고, 이 가운데 432명이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 출신이었다.

자료 : 오마이뉴스(2014,09,28),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37898

■ 2014.12.10 제주국제학교 자체 감사 들여다보니…수업료 미납, 부당승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제주국제학교인 노스런던컬리지어트스쿨 제주(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와 브랭섬홀아시아(BranksomeHall Asia), 이들 국제학교의 운영 법인인 (주)해울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 결과 NLCS Jeju, BHA 수업료 2억2500만원이 미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개발센터는 수업료 미납에 따른 처리 기준을 수립하고 연체료 역시 일관된 기준으로 받을 것을 주문했다.

자료 : 경향신문(2014,12,10), <https://www.khan.co.kr/local/Jeju/article/201412101811011>

■ 2015.09.16 제주 국제학교의 타당성 조사 재실시 주장한 이찬열, 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제주국제학교인 노스런던컬리지어트스쿨 제주(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와 브랭섬홀아시아(BranksomeHall Asia), 이들 국제학교의 운영 법인인 (주)해울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 결과 NLCS Jeju, BHA 수업료 2억2500만원이 미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개발센터는 수업료 미납에 따른 처리 기준을 수립하고 연체료 역시 일관된 기준으로 받을 것을 주문했다.

자료 : 시사위크(2015,09,16),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52536>

■ 2015.09.16 [2015 국감] 강남 귀족학교로 전락한 제주 국제학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제주국제학교인 노스런던컬리지어트스쿨 제주(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와 브랭섬홀아시아(BranksomeHall Asia), 이들 국제학교의 운영 법인인 (주)해올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 결과 NLCS Jeju, BHA 수업료 2억2500만원이 미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개발센터는 수업료 미납에 따른 처리 기준을 수립하고 연체료 역시 일관된 기준으로 받을 것을 주문했다.

자료 : 쿠키뉴스(2015.09.16.),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1509160266>

■ 2016.02.10 제주 국제학교 만족도, 학부모·학생 90% “Good!”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3개교(NLCS Jeju·BHA·KIS Jeju) 재학생과 학부모 10명 중 9명 정도가 국제학교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유학에 따른 외화절감액이 개교 이후 5년간 2500억원이 넘는다는 분석도 나왔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10일 발표한 국제학교의 재학생과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제학교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고, 조기유학 수요 흡수 등 영어교육도시의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 : 제주의 소리(2016.02.10), <http://www.i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73416>

■ 2019.03.12 제주 5번째 국제학교 개교 움직임…시민단체 “불허하라” 촉구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다섯 번째 국제학교가 개교할 움직임이 일자 제주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주도교육청에 설립 불허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와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ACS 제주캠퍼스를 ‘영리학교’로 규정하며 도교육청에 설립 불허를 촉구했다. 두 단체는 “(주)ACS제주가 설립 인허가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2020년 10월 개교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며 “일부 기획부동산들은 이와 연계한 부동산 홍보에도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이어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들은 우리나라 교육 불평등의 대표적 상징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라며 “ACS 제주캠퍼스 설립 역시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교육을 서열화시키는 귀족 교육을 확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자료 : 뉴스1(2019.03.12), <https://www.news1.kr/articles/?3569394>

■ 2022.07.21 인천글로벌캠퍼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대표이사 유병윤)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과 지난 2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유병윤 대표이사, 김광수 교육감 외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본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간의 학술교류 및 인천글로벌캠퍼스 대학 입학 정보 제공, ▲우수 인재 유치·홍보를 위한 상호협력, ▲동반 성장을 위한 연계사업 추진,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공동 협력과제 발굴 및 사업 수행, ▲상호 간의 발전 및 관심사항에 대한 지속적 교류를 위해 향후 협력한다.

자료 : 일요신문(2022.07.21),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33076

2.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

■ 2010.03.29. 제주도교육청, YBM시사와 '국제학교 설립' 협상계획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6일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공립 국제학교 운영 우선협상대상자인 메이플립 교육재단(CHINA MAPLE LEAF SYSTEMS AND SCHOOLS VANCOUVER LTD.)과의 국제학교 설립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29일 최종 협상결렬을 통보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자료 : 뉴스시스(2010.03.2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03159378?sid=102>

■ 2010.04.27. 국제학교 설립협상 난항...업체측 잉여금 '운영비 시설투자비'보장 요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영어교육도시내 설립할 공립 국제학교 설립 협상 대상으로 지정된 (주)YBM시사와의 위탁 운영 법인 선정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YBM 측의 투자분 회수와 관련, 법적 조항 검토로 지연되고 있다"며 "금명 협상을 마무리하고 29일째 협약할 계획이다"고 27일 밝혔다. 그러나 YBM시사가 학교 운영결과 발생한 잉여금(수익금)을 운영비, 시설투자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교육청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특별법에 학교운영으로 발생한 잉여금이 YBM시사가 요구하고 있는 대로 특별법에 명시된 "학교설립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에 적법한지를 검토하고 있다.

자료 : 뉴스시스(2010.04.2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03209038?sid=102>

■ 2010.06.10. 제주 국제학교 내년 4월말 신입생 선발...로드맵 확정

주영어교육도시 공립 국제학교가 올해 1차 전형을 실시하고, 4월말까지 신입생을 선발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0일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공립 국제학교의 내년 9월 개교를 위하여 운영법인으로 선정된 (주)와이비엠시사와 협의를 거쳐 로드맵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오는 7월까지 국제학교 회계규칙을 제정 공포하고, 시설은 7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며 9월에 착공하고 내년 8월 완공할 예정이다

자료 : 제주의 소리(2010.06.10.),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82802>

■ 2011.06.01. 공립 제주국제학교 명칭, '한국국제학교'로 결정

학교 명칭으로 논란이 일었던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공립 제주국제학교 명칭이 한국국제학교인 KIS(Korea International School)로 결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일 제282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 국제학교 설치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교육위는 제주국제학교가 YBM시사 중 하나의 캠퍼스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KIS Jeju'에서 'Jeju' 명칭을 제외했다.

자료 : 뉴스시스(2011.06.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03887587?sid=102>

■ 2011.10.13. 국내 최초 공립 국제학교 'KIS' 개교...글로벌 인재 육성 요람

국내 최초의 공립 국제학교인 한국국제학교(Korea International School)가 개교했다. 제주도교육청은 13일 오전 10시30분 서귀포시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위치한 한국국제학교가 개교식을 거행했다. 한국국제학교는 제주영어교육 도시 내에 최초로 들어선 공립 국제 학교로 지난 19일 개교했다. 한국국제학교는 WASC(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 미국 서부 교육 연합회)의 규정을 따르는 학교로써, 10월 현재 369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45명의 외국인 교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자료 : 제주의 소리(2011.10.1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03887587?sid=102>

■ 2012.10.11. YBM, 제주영어도시에 부지매입 국제고 설립

전국 최초의 공립 국제학교를 위탁 운영 중인 (주)YBM시사가 최근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부지매입을 마치고 사립 국제고등학교 설립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제주도교육청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에 따르면 YBM시사측은 9월말 JDC와 협의 끝에 현행 한국국제학교(KIS) 옆 부지 매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YBM시사는 2010년 제주도교육청이 세운 국내 최초의 공립 국제학교 위탁 운영권을 떠난 이후, 고등학교 추가 신축을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해 왔다.

자료 :제주의 소리(2012.10.11.)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21181>

3. NLCS Jeju

■ 2009.03.03 제주 영리 국제학교 끝내 설립 허용

제주도에 영리법인 국제학교 설립이 가능해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 관련 단체들은 영리법인 국제학교는 '학교 주식회사'를 의미한다면서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위험 소지도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는 영리학교 설립 근거 조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례 제정 등 후속절차에 나섰다 밝혔다. 개정된 특별법은 영리법인의 초·중·고 국제학교 설립을 제주도 지역에 한해 허용했다. 논란이 됐던 영리법인의 본국 과실송금은 금지됐다. 초등학교의 경우 3학년 이하는 외국인만 입학이 가능하며, 3학년 이상과 중·고등학교는 내외국인 비율 제한 없이 누구나 입학할 수 있다.

자료 : 경향신문(2009,03,03), <https://www.khan.co.kr/local/Jeju/article/200903031741515>

■ 2009.04.02. 제주영어교육도시 해외 명문 사학 유치 닷 올려...英 NLCS와 MOU 체결

영국을 방문중인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양성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철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권한대행은 1일 런던소재 힐튼 런던호텔에서 영국 명문 사립학교인 '노스 런던 칼리지에이트 스쿨'(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NLCS)과 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산업 육성에 첫 걸음을 내딛었다. 이날 MOU 체결식에는 NLCS 헬렌 스톤 이사장, 버니스 맥케이브 교장 등 NLCS 관계자, 유종하 대한적십자사 총재, 문하영 제주도국제관계자문대사 및 제주도의회 박명택 문화관광위원장, 문대림 환경도시위원장, 강남진 교육위원장이 참석했다. 제주도·도교육청·JDC와 NLCS 등 4개 기관은 이날 6개 항의 MOU 체결을 통해 제주영어교육도시내에 들어설 NLCS 부속 국제학교가 설립, 성공적으로 개교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자료 :뉴스시스(2009,04,02),<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02603631?sid=102>

■ 2010.03.25. 英명문 NLCS 제주 진출..내년 9월 개교

영국 명문사립학교 '노스 런던 칼리지에이트 스쿨'(NLCS)이 내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에 분교 형태의 국제학교를 개교한다. 25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NLCS는 26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NLCS 본교에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 운영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한다. 개교 160주년을 맞는 NLCS는 이튼 칼리지(Eton College), 해로우 스쿨(Harrow School), 웰링턴 칼리지(Wellington College) 등과 함께 영국 최고의 명문학교로,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 입학률에서도 최상위권 학교다. NLCS-제주 국제학교는 초(4~6학년), 중, 고교 통합과정의 남녀공학 형태로, 1천388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자료 : 연합뉴스(2010.03.2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3188421?sid=100>

4. BHA(Branksome Hall, Asia)

■ 2010.07.06. 제주에 加 명문 여학교 '브랭섬홀' 유치

캐나다 명문 사립학교 '브랭섬홀(Branksome Hall)'의 분교가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일원에 조성 중인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오는 2012년 세워진다. 6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변정일)와 브랭섬홀이 오는 7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브랭섬홀 본교에서 제주에 '브랭섬홀 아시아' 국제학교를 설립하는 본계약을 체결한다. 이로써 제주영어교육도시에 국제학교를 개설하기로 확정된 곳은 영국의 노스 런던 칼리지에이트 스쿨(NLCS)와 한국국제학교 등 3 곳으로 늘었다. 브랭섬홀은 1903년 설립된 여학교로 유치원에서부터 12학년(고3)까지의 학제를 갖추고 있다.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대학입학 국제자격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졸업생 100%가 대학에 진학했다.

자료 : 매니투데이, (2010.07.06.),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0070609213720613&outlink=1&ref=https%3A%2F%2Fsearch.naver.com>

■ 2011.05.24. 영어교육도시 내 사립국제학교 브랭섬홀 추진

주영어교육도시 내 두 번째 사립국제학교 '브랭섬 홀 아시아(Branksome Hall Asia)' 설립 계획서가 접수돼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주)해울에서 제주영어교육도시의 두 번째 사립 국제학교인 '브랭섬 홀 아시아' 학교설립 승인 신청서를 접수했다. '브랭섬 홀 아시아'는 2012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유치원부터 12학년(고등학교과정)까지 총 60학급에 1208명이 모집된다. 교육과정은 캐나다 토론토에 위치하고 있는 본교인 브랭섬 홀 스쿨(Branksome Hall School)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국제인증교육과정인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교육과정도 이수하게 된다.

자료 : 뉴시스, (2011.05.2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03870933?sid=102>

■ 2011-06-29 제주 국제학교 '실부른 착공식' 논란

정부투자기관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들어설 예정인 국제학교에 대한 당국의 설립승인과 건축허가도 받지 않은 채 착공식을 강행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JDC는 30일 오후 3시30분 제주영어교육도시 부지에서 영어교육도시 두 번째 사립 국제학교인 캐나다 브랭섬 홀 아시아(Branksome Hall Asia) 착공식을 한다. JDC와 사립국제학교 설립법인인 (주)해울은 브랭섬 홀 학교 설립 승인 신청서를 5월 16일 도교육청에 제출했다. 설립승인 심의는 7월초쯤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심의를 통과해도 서귀포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료 : 세계일보(2011.06.29.), <https://www.segye.com/newsView/20110629004777>

■ 2011.12.03 내년 개교 국제학교 ‘브랭섬홀 아시아’ 제주교육청 심의 통과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사립학교 운영법인인 해울은 제주도교육청이 최근 개최한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에서 ‘브랭섬홀 아시아(브랭섬홀 제주캠퍼스·Branksome Hall Asia·이하 BHA) 설립계획 승인신청서’에 대한 심의가 통과됐다고 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완성이 보다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울에 따르면 지난 9월 개교한 영국 명문 사학 노스런던칼리지잇스쿨(NLCS) 제주에 이어 내년 10월 개교 예정인 BHA는 캐나다 최고의 명문 여자사학인 브랭섬홀의 첫 해외 캠퍼스다. BHA는 본교의 교육 철학을 기반으로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전 학년에 걸쳐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는 국내 최초의 학교로, 해외 거주 경험이 없는 한국인도 입학이 가능하며 유치원부터 3학년까지는 남·여 공학으로 그리고 4학년부터 10학년까지는 여학교로 운영될 예정이다.

자료 : 헤럴드경제(2011.12.03.),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11202000865>

■ 2012.10.11. 사립 국제학교 ‘브랭섬 홀 아시아’ 개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두 번째 사립국제학교인 브랭섬 홀 아시아(Branksome Hall Asia)가 오는 15일 개교한다고 11일 밝혔다. 브랭섬 홀 아시아는 지난 6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동의를 거쳐 교육감이 설립 승인한 학교로 개교식은 오는 10월29일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6월 서귀포시 내 9만5000㎡ 부지에 착공한 브랭섬 홀 아시아는 올해 9월에 준공했으며 북미·아시아 및 유럽 지역 등에서 오랜 경험과 IB 프로그램에 특화된 전문성을 보유한 교사 46명의 채용을 완료했다.

자료 : 제민일보(2012.10.11.)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96251>

5. SJA Jeju(ST. Johnsbury Academy Jeju)

■ 2014.01.15 미 명문사학 제주에 유치하고도 개교 늦추는 이유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주영어교육도시 세 번째 사립 국제학교가 될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St. Johnsbury Academy Jeju)의 건립 방식과 개교 시기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미국 본교(SJA)와 국제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본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업체까지 선정했지만 이미 개교한 NLCS 제주와 브랭섬홀아시아(BHA)의 건립 방식을 따르자니 재정부담이 만만치 않고, 마냥 건립을 늦추거나 건립 방식을 바꾸자니 대외 공신력이 떨어질 수 있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자료 : 제주의 소리(2014.01.15.),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39358>

■ 2015.10.14 영어도시 국제학교 직접투자 결정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한욱·이하 JDC)가 ‘직접 투자’를 통해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사립 국제학교 건립을 추진키로 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JDC에 따르면 9월 열린 이사회에서 영어교육도시의 3번째 사립 국제학교인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SJA Jeju) 건립을 위한 사업구조와 학교시설 계획, 총사업비 등을 논의하고 결정했다. SJA Jeju는 미국 본교와 동일한 교과과정으로 운영되며, 영어교육도시내 5만7815㎡ 부지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1254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교 시기는 2017년 9월이다.

자료 : 제민일보(2015.10.14),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73245>

■ 2016.01.13. JDC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美 국제학교 2017년 개교"

김한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은 13일 제주도청 기자회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지속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영어교육도시는 2016-17학년도 재학생 수를 정원 대비 73% 이상 끌어올린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해 안정적 성장세를 가속화하고 기관의 지속성을 견인하는 선봉 사업으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2017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미국 국제학교(SJA) 건립은 기존 BLT방식으로 인한 재무 구조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JDC가 100% 투자해 자회사(주해울이임대,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방식을 전면 변경해 오는 3월에 착공, 개교 준비를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 : 헤드라인 제주(2016.01.13.)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2558>

■ 2016.02.18. 美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 설립 승인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Saint Johnsbury Academy Jeju, SJA 제주)' 설립이 공식 승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국제학교설립,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7일 관련 조례에 따라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의 설립계획을 공식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SJA 제주는 서귀포시 구역리 일원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부지 10만2171㎡, 연면적 5만7832㎡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된다. 착공은 다음달로 예정돼 있다.

자료 : 헤드라인제주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6144>

■ 2016.07.22. 제주영어도시 세인트존스베리 추진과정 졸속 의혹

지난 4월 착공한 국제학교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SJA Jeju)가 사업자 선정 및 승인과정에서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해울측은 법적인 절차에 아무런 하자도 없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SJA제주 설립심의위원회 위원이 포함된 인사들이 감사원에 SJA제주 설립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며 청문감사를 신청했고, 감사원은 신청내용을 토대로 예비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울은 2012년 12월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SJA) 측과 국제학교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SJA Jeju) 설립하기로 합의했으며,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2월 미국 세인트 존스베리 국제학교 제주 설립계획 승인(종합) 설립했다.

자료 : 제민일보 (2016.07.22.)<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665>

■ 2017.09.25. 제주도교육청, 영어교육도시 내 SJA Jeju 국제학교 설립 최종 승인

2년 동안 준비해온 국제학교 Saint Johnsbury Academy Jeju(약칭 SJA Jeju) 국제학교가 드디어 문을 열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부 동의를 거쳐 지난 22일(금) 영어교육도시 내 SJA Jeju 국제학교 설립을 최종 승인했다. SJA Jeju 국제학교는 개교예정일이 올해 10월 23일(월)로, 68학급 총 1254명의 학생 정원으로 미국교육과정을 토대로 운영할 예정이며, 올해 개교년도는 27학급, 정원 498명으로 시작한다. 특히, SJA Jeju 국제학교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3개의 국제학교와는 달리 최초로 국제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학부모·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과 소통하는 업그레이드된 국제학교가 될 방침이다.

자료 : 에듀동아(2017.09.25.) : http://edu.donga.com/?p=article&ps=view&at_no=20170925162644550660

6. 채드윅국제학교

■ 2004.07.20. 인천에 공립 국제학교 설립 추진

인천에 국제적 인증프로그램에 맞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제학교'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20일 인천의 국제도시화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 주관으로 이날 부평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인천시 초·중등교육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한 공청회에서 경인교대 왕한신 교수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운영에 따라 기존 인천지역 교육만족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해서는 교육을 시정원리에만 맡기지 말고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 : 한겨레(2004.07.20.)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0069818?sid=102>

■ 2010.02.02. 안 시장, 미국 대학 및 국제학교 유치 위해 방미

안상수 인천시장을 비롯한 시 대표단은 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볼티모어, 워싱턴DC를 5일까지 3박5일 동안 방문한다. 안 시장의 이번 미국 방문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대학 및 국제학교운영을 위해 미국 남기주대(USC)와 UC버클리를 방문, 인천분교설립과 프로그램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다. 안 시장은 이어 세계 최고의 국제학교를 운영하는 '채드윅 스쿨(Chadwick School)' 이사장과 교장을 만나 송도국제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및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안 시장 일행은 또 LA와 볼티모어(메릴랜드)에서 열리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교민간담회에 참석해 미국의 주요 병원 관계자들과 실질적인 업무협의를 벌인다.

자료 : 뉴시스(2010.02.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03072172?sid=102>

■ 2010.06.21. [인천] 송도국제학교 9월 개교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국제화를 뒷받침하고 외국인 자녀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송도국제학교. 당초 2009년 8월 문을 열 계획이었지만 학교 운영재단 선정 등을 놓고 교육과학부와 마찰을 빚다 개교가 세차레나 연기되는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말 미국 LA의 '채드윅 스쿨'이 예비 운영자로 선정되면서 교과부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냈고 결국 지난해 예비 승인과정을 마쳤습니다. '채드윅 스쿨'은 하버드와 예일 등 아이비리그 대학진학률이 캘리포니아주에서 10위권안에 드는 명문사립입니다. 송도국제학교측은 이달 말부터 신입생 모집을 시작해 오는 9월 정식으로 문을 연다는 계획입니다.

자료: YTN(2010.06.21.), https://www.ytn.co.kr/_ln/0103_201006211926517907

7. 대구국제학교

■ 2005.01.04. 대구 수성구 '국제학교 특구' 추진

대구 수성구청은 지난해 시행된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별법'에 따라 관내 지역에 국제학교 특구 조성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수성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학교는 일반고등학교이지만 학교장이 정부로부터 자율학교로 지정받아 졸업생이 외국의 명문대로 진학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편입프로그램인 AP(=Advanced Placement Program) 등을 도입·교육하는 학교이다. 또 자율학교로 지정되기 때문에 학생모집이나 학교편성, 등록금채정 등 학사 행정의 상당부분에서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자료 : 연합뉴스(2005.01.0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0872944?sid=102>

■ 2005.11.09. [지역플러스] 대구 국제학교 설립 추진

대구 수성구는 2009년까지 시지지구에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키로 하고, 재정경제부에 '교육국제화 특구' 지정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미국 서부의 한 유명대학과 영국계 교육전문 그룹이 국제학교 설립 제안을 냈으며 내년 상반기 중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 양해각서를 체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국제화 특구' 지정이 되면 외국인 교사채용 및 외국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록금 책정 등에서 규제를 받지 않는다. 국어와 국사를 제외한 전 교과와 교사를 외국인으로 선발한다.

자료 : 서울신문(2005.11.1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0066442?sid=102>

■ 2010.05.02. 첫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대구국제학교 승인

교육과학기술부는 미국 메인주 소재 '리 아카데미'(Lee Academy)의 국내 분교인 대구국제학교(DIS, Daegu International School)의 설립을 최종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학교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내 최초로 승인한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으로, 대구 동구 봉무동에 8월 개교한다. 리 아카데미는 1845년 설립돼 275명이 재학 중인 사립학교이며 2005년 이후 메인주 수학연맹경시대회에서 줄곧 1위를 해왔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자료 : 연합뉴스(2010.05.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3255334?sid=102>

■ 2010.08.11. 국내 첫 인터내셔널스쿨 '대구국제학교' 개교

국내에서 처음으로 외국학교가 투자해 직접 운영하는 '대구국제학교'가 오는 13일 개교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11일 대구시와 대구국제학교에 따르면 대구국제학교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학교법인이 직접 설립해 운영하는 국내 최초의 인터내셔널스쿨이다. 미국 메인주(州)의 사립학교 리 아카데미(Lee Academy)가 학교를 설립, 운영하며 지난 4월30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국내 제1호 국제학교로 승인받았다.

자료 : 연합뉴스(2010.08.1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4600428?sid=101>

제4절 국제학교에 대한 인식 및 수요 검토

1. 국제학교 설립 타당성 조사시 수요조사 결과 검토

- 본 조사³⁾는 부산광역시에 의뢰하여 (재)동양경제연구원에서 2017년 05월 10일 - 05월 30일까지 20일간 조사한 명지국제학교 설립 타당성 조사결과로 외국인 투자기업, 일반 학부모, 외국인학교에 자녀가 재학중에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였음

■ 외국인투자기업(150업체) 대상 조사 결과

- 자녀의 교육문제
 - 외국인투자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응답자에게 자녀교육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외국인 학교에 진학 91명(79.8%), 내국인학교에 진학 15명(13.2%), 홈스쿨링 7명(6.1%)의 순으로 조사됨
 - 본 설문항목은 현재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만약 자녀와 함께 거주한다는 가정하에 자녀의 교육문제를 설문한 결과이며, 자녀 교육에 대한 의견을 질의한 것임

<표 III-26> 자녀의 교육문제

구분	빈도(명)	비율(%)
외국인학교에 진학	91	79.8%
내국인학교에 진학	15	13.2%
홈스쿨링	7	6.1%
기타	1	0.9%
합계	114	100.0%

자료 : 부산광역시, 명지국제학교(K-12) 설립 타당성 조사 및 운영계획 수립, 2017, p.68.

○ 자녀의 교육비 부담

- 본 설문항목 역시 자녀와 함께 국내에 체류했을 경우,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의견을 설문한 결과임. 그 결과는 회사전액지원 86명(69.9%), 본인부담+회사지원 23명(18.7%), 본인전액부담 12명(9.8%)의 순으로 조사됨

3) 부산광역시, 명지국제학교(K-12) 설립 타당성 조사 및 운영계획 수립, 2017.

<표 III-27> 자녀의 교육비 부담

구분	빈도(명)	비율(%)
본인전액부담	12	9.8%
회사전액지원	86	69.9%
본인부담+회사지원	23	18.7%
기타	2	1.6%
합계	123	100.0%

자료 : 부산광역시, 명지국제학교(K-12) 설립 타당성 조사 및 운영계획 수립, 2017, p.69.

○ 한국의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

- 한국의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음
- 교육비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보통 76명(52.1%), 불만 33명(22.6%), 만족 31명(21.2%)의 순으로 조사되어 교육비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보통 77명(52.7%), 만족 41명(28.1%), 불만 12명(8.2%), 매우만족 11명(7.5%)의 순으로 조사됨.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음
- 교사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보통 81명(55.5%), 만족 54명(37.0%), 매우만족 6명(4.1%)의 순으로 조사되어, 교사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90% 이상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시설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보통 71명(48.6%), 만족 63명(43.2%), 매우만족 8명(5.5%)의 순으로 조사되어,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됨
- 학교의 접근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보통 81명(55.5%), 만족 43명(29.5%), 불만 17명(11.6%)의 순으로 조사되어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 역시 보통이상의 만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방과후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보통 85명(58.2%), 만족 39명(26.7%), 불만 11명(7.5%)의 순으로 조사되어 방과 후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역시 보통이상의 수준으로 조사됨

<표 III-28> 한국의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합계
교육비에 대한 만족도	4 (2.7%)	31 (21.2%)	76 (52.1%)	33 (22.6%)	2 (1.4%)	146 (100.0%)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11 (7.5%)	41 (28.1%)	77 (52.7%)	12 (8.2%)	5 (3.4%)	146 (100.0%)
교사에 대한 만족도	6 (4.1%)	54 (37.0%)	81 (55.5%)	3 (2.1%)	2 (1.4%)	146 (100.0%)
시설에 대한 만족도	8 (5.5%)	63 (43.2%)	71 (48.6%)	3 (2.1%)	1 (0.7%)	146 (100.0%)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	2 (1.4%)	43 (29.5%)	81 (55.5%)	17 (11.6%)	3 (2.1%)	146 (100.0%)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7 (4.8%)	39 (26.7%)	85 (58.2%)	11 (7.5%)	4 (2.7%)	146 (100.0%)

자료 : 부산광역시, 명지국제학교(K-12) 설립 타당성 조사 및 운영계획 수립, 2017, p.70.

○ 명지국제학교의 진학여부

- 명지국제학교의 진학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진학할 의사가 있다 71명(48.6%), 잘 모르겠다 53명(36.3%), 진학할 의사가 없다 22명(15.1%)의 순으로 조사됨

<표 III-29> 명지국제학교의 진학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있다	71	48.6%
없다	22	15.1%
잘 모르겠다	53	36.3%
합계	146	100.0%

자료 : 부산광역시, 명지국제학교(K-12) 설립 타당성 조사 및 운영계획 수립, 2017, p.72.

○ 명지국제학교와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관계

- 명지국제학교와 외국인투자기업 유치관계에 대한 설문조사한 결과, 그저 그렇다 77명(52.7%), 그렇다 37명(25.3%), 매우 그렇다 22명(15.1%)의 순으로 조사되어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국제학교의 설립이 외국인투자유치에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조사됨

<표 III-30> 명지국제학교의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관계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그렇다	22	15.1%
그렇다	37	25.3%
그저 그렇다	77	52.7%
그렇지 않다	8	5.5%
전혀 그렇지 않다	2	1.4%
합계	146	100.0%

자료 : 부산광역시, 명지국제학교(K-12) 설립 타당성 조사 및 운영계획 수립, 2017, p.74.

■ 일반 학부모(450명) 대상 조사 결과

○ 자녀 교육(유학)에 대한 사항

- 자녀 가운데 유학 중이거나 유학이나 해외연수를 보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체 434명 가운데 114명(26.3)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III-31> 유학경험

구분	빈도(명)	퍼센트(%)
있다	114	26.3
없다	320	73.7
합계	434	100

자료 : 부산광역시, 명지국제학교(K-12) 설립 타당성 조사 및 운영계획 수립, 2017, p.78.

- 연수 및 유학한 국가는 미국이 52명(12.0%)으로 가장 많았으며, 캐나다가 26명(6.0%)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호주가 16명(3.7%)으로 나타났음
- 유학을 보낼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보낼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202명(46.5%), 보낼 의사가 없다가 170명(39.2%), 잘 모르겠다가 62명(14.3%)로 나타났음

<표 III-32> 유학 보낼 의사

구 분	빈도(명)	퍼센트(%)
있다	202	46.5
없다	170	39.2
잘 모르겠다	62	14.3
합계	434	100

자료 : 부산광역시, 명지국제학교(K-12) 설립 타당성 조사 및 운영계획 수립, 2017, p.79.

- 국제학교에 보낼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보낼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282명 (65.0%), 보낼 의사가 없다가 78명(18.02%), 잘 모르겠다가 74명(17.1%)로 나타났음. 이는 유학을 보낼 의사에 비하여 국제학교에 보낼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음

<표 III-33> 국제학교에 보낼 의사

구분	빈도(명)	퍼센트(%)
있다	282	65.0
없다	78	18.0
잘 모르겠다	74	17.1
합계	434	100

자료 : 부산광역시, 명지국제학교(K-12) 설립 타당성 조사 및 운영계획 수립, 2017, p.81.

- 국제학교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가장 고려되는 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비용문제가 208명(4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기타사항에서는 효과성 검증에 대한 부분과 교사의 마인드, 학생의 적응력, 학교의 시스템, 진학문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음

<표 III-34> 국제학교 선택 시 고려사항

구 분	빈도(명)	퍼센트(%)
비용문제	208	47.9
학교명성	108	24.9
안전 및 통학거리	62	14.3
교육프로그램	18	4.1
기타	38	8.8
합계	434	100

자료 : 부산광역시, 명지국제학교(K-12) 설립 타당성 조사 및 운영계획 수립, 2017, p.82.

■ 외국인학교 재학중인 학부모(150명) 대상 조사 결과

○ 외국인학교 재학 이유

- 외국인학교에 보내게 된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진로(장래)문제 74명(49.3%), 유학비용 문제 25명(16.7%), 영어교육문제 43명(28.7%), 인성 및 안전문제 7명(4.7%), 기타 1명(0.7%)으로 조사됨

<표 III-35> 외국인학교 재학 이유

구분	빈도(명)	퍼센트(%)
진로(장래) 문제	74	49.3%
유학비용 문제	25	16.7%
영어교육 문제	43	28.7%
인성·안전 문제	7	4.7%
기타	1	0.7%
합계	150	100.0%

자료 : 부산광역시, 명지국제학교(K-12) 설립 타당성 조사 및 운영계획 수립, 2017, p.88.

- 외국인 학교의 선택시 중요한 요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안전 및 통학거리 문제 11명(7.3%), 비용문제 24명(16.0%), 학교명성 71명(47.3%), 교육프로그램 40명(26.7%), 기타 4명(2.7%)으로 조사됨

<표 III-36> 외국인 학교 선택 요인

구분	빈도(명)	퍼센트(%)
안전 및 통학거리 문제	11	7.3%
비용문제	24	16.0%
학교명성	71	47.3%
교육프로그램	40	26.7%
기타	4	2.7%
합계	150	100.0%

자료 : 부산광역시, 명지국제학교(K-12) 설립 타당성 조사 및 운영계획 수립, 2017, p.89.

- 외국인 학교 졸업후 진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해외유학 137명(91.3%), 국내대학 진학 10명(6.7%), 국내 외국대학 진학 2명(1.3%), 기타 1명(0.7%)으로 조사됨

<표 III-37> 외국인 학교 졸업 후 진로

구분	빈도(명)	퍼센트(%)
해외유학	137	91.3%
국내대학 진학	10	6.7%
국내 외국대학 진학	2	1.3%
기타	1	0.7%
합계	150	100.0%

자료 : 부산광역시, 명지국제학교(K-12) 설립 타당성 조사 및 운영계획 수립, 2017, p.89.

2. 시사점

- 외국인투자기업 소속 응답자의 경우 외국인학교에 자녀를 진학시키는 비율이 79.8%로 매우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교육비, 교육프로그램, 교사, 시설, 학교 접근성,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하는 경향을 보임
 - 또한, 국제학교가 신설될 경우 보낼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48.6%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외국인학교에서 국제학교로 전학 수요는 일정수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일반학부모의 경우 국제학교 진학에 대해서 48.6%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국제학교 설립시 교육수요는 일정수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제5절 국제학교 운영 현황 분석

1. 국제학교 운영 현황

■ 전국 외국인, 국제학교 현황

- 전국 외국인 학교의 학생수는 외국인 750명, 내국인 379명으로 총 1,129명으로 나타났으며 고등졸업 이후 진로는 국내진학 6명 국외진학 136명으로 나타남
- 전국 국제학교의 학생수는 외국인 1,194명, 내국인 5,453명으로 나타났으며 고등졸업 이후 진로는 국내진학 10명, 국외진학 446명으로 나타남

<표 III-38> 전국 외국인학교 및 국제학교 학생수·고등 졸업진로

(단위 : 명)

학교명	학생수											고등 졸업진로		
	계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국내진학	국외진학	
	합계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학교	계	1,129	750	379	69	4	338	72	151	77	192	226	6	136
	부산국제 외국인학교	314	239	75	23	1	93	17	52	19	71	38		15
	부산외국인 학교	231	186	45	24	1	88	7	34	14	40	23		21
	광주외국인 학교	33	23	10	3		7	2	5	1	8	7	2	2
	대전외국인 학교	373	152	221	8	2	49	32	37	39	58	148	2	49
	현대외국인 학교	59	52	7	3		42	7	7					
	경남국제 외국인학교	53	44	9	2		25	1	10	1	7	7	2	49
	에서튼국제 외국인학교	66	54	12	6		34	6	6	3	8	3		

학교명	학생수											고등 졸업진 로		
	계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국내 진학	국외 진학	
	합 계	외 국 인	내 국 인	외 국 인	내 국 인	외 국 인	내 국 인	외 국 인	내 국 인	외 국 인	내 국 인			
국제 학교	계	6,647	1,194	5,553	143	265	490	1,911	304	1,558	243	1,659	10	446
	청라달튼 외국인학교	497	158	339	23	1	65	56	32	80	38	202	7	47
	대구 국제학교	350	78	272	6	18	31	100	21	69	6	25	2	19
	채드윅 송도국제학교	1,401	581	820	74	45	255	403	159	207	93	165		68
	KISJeju	973	39	934	6	51	13	322	9	234	11	327		74
	NLCSJeju	1,465	135	1,330	5	39	58	381	30	417	42	493		110
	BHA	830	98	732	10	50	26	211	37	269	25	202		79
	St.Johnsbury AcademyJeju	1,131	105	1,026	19	61	42	438	16	282	28	245	1	49

자료 : 교육부,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https://www.isi.go.kr>).

■ 국제학교 예산 현황

- 외국인학교의 예산현황은 청라달튼외국인학교가 수업료/입학금 12,272,239천원, 기타 294,369천원 총 13,209,589천원으로 외국인학교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대전외국인학교, 부산국제외국인학교 순으로 나타남
- 국제학교의 예산현황은 채드윅송도국제학교 수업료/입학금 54,777,024, 기성회금 73,330천원, 기타 5,730,486 천원으로 국제학교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NLCSJeju, BHA 순으로 나타남

<표 III-39> 전국 외국인학교 및 국제학교 예산

(단위 : 천원)

학교명	22-23 예산				
	계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금	기타	
외 국 인 학 교	부산국제외국인학교	10,217,640	8,950,408	398,128	869,104
	부산외국인학교	5,205,951	5,205,951		
	광주외국인학교	1,200,000	680,000		520,000
	대전외국인학교	12,133,000	10,422,000		1,711,000
	현대외국인학교	1,117,931	887,931		230,000
	경남국제외국인학교	1,434,000	1,434,000		
	에서튼국제외국인학교	2,905,731	1,544,593	901,092	460,046
	청라달튼외국인학교	13,209,589	12,272,239		937,350
국 제 학 교	대구국제학교	8,408,339	8,113,970		294,369
	채드웍송도국제학교	60,580,840	54,777,024	73,330	5,730,486
	KISJeju	18,380,560	15,277,200		3,103,360
	NLCSJeju	58,567,000	51,735,000		6,832,000
	BHA	46,343,000	41,247,000		5,096,000
	St.JohnsburyAcademy,Jeju	33,692,285	29,572,800		4,119,485

자료 : 교육부,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https://www.isi.go.kr>).

■ 국제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

- 1993년부터 2012년까지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 총 11개교의 설립 및 신축이전, 증축비용으로 총 2,512.34억 원을 지원
- 교육부는 제주특별자치도법 에 근거하여 국제학교 1개교(KIS Jeju)에 설립비로 국비 486억 원을 지원하였고, 지식경제부는 외국교육기관 1개교와 외국인학교 8개교에 설립 및 신축이전, 증축비용으로 국비 554.17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인학교 1개교에 설립비로 국비 75억 원을 지원

<표 III-40> 국제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지원구분	지원내역		
				국비	지방비	계
경제자유 구역청	외국인 학교	청리달튼 외국인학교	설립지원	75	75	150
지식 경제부	외국인 학교	경남국제 외국인학교	설립, 체육관 건립지원	(설립) 12.17 (체육관) 6	12,176.5	24,341.3
		경기수원 외국인학교	설립지원	50	100	150
		서울용산 국제학교	설립지원	130	481	611
		부산국제 외국인학교	신축 이전지원	100	369	469
		대전외국인 학교	신축 이전지원	65	65	130
		광주외국인 학교	신축 이전지원	21.5	21.5	43
		한국외국인 학교(판교)	증축지원	18	18	36
		포항외국인 학교	설립지원	53	127	180
	외국 교육기관	대구국제학교	설립지원	98	122	220
교육부	국제학교	KIS Jeju	설립지원	486	-	486
합계				1,115.17	1,397.17	2,512.34

2. 제주국제학교 운영 현황

■ 제주국제학교 학생 총원률 및 중도탈락률

<표 III-41> 제주국제학교 학생 총원률 및 중도탈락률

(단위 : 명,%)

학교명	학년도	학생수			총원율 (%)	중도탈락률 (%)
		정원(명)	현원			
			외국인(%)	내국인(%)		
NLCS 제주	2011/2012	1,508	20(1%)	416(28%)	29%	10%
	2012/2013	1,508	38(3%)	620(41%)	44%	17%
	2013/2014	1,508	50(4%)	686(45%)	49%	14%
	2014/2015	1,508	84(6%)	728(48%)	54%	8%
	2015/2016	1,508	109(7%)	913(60%)	67%	-
브랜섬홀 아시아	2012/2013	1,212	19(6.1%)	291(93.9%)	25.6%	13.5%
	2013/2014	1,212	46(8.6%)	490(91.4%)	44.2%	33.0%
	2014/2015	1,212	77(13.2%)	508(86.8%)	48.3%	19.7%
	2015/2016	1,212	신입생 포함 총 700명 예상		57.8%	-
한국 국제학교 (고교 제외)	2011/2012	504	1 (0.3%)	352 (99.7%)	70%	24%
	2012/2013	504	5 (1.4%)	370 (98.6%)	74%	31%
	2013/2014	504	12 (3.8%)	303 (96.2%)	63%	22%
	2014/2015	504	22 (5.6%)	370 (94.4%)	50%	11%
채드윅 송도국제 학교	2012/2013	2,080	121 (17%)	582 (83%)	34%	20%
	2013/2014	1,508	50(4%)	686(45%)	49%	14%
	2014/2015	1,508	84(6%)	728(48%)	54%	8%
대구국제 학교	2012/2013	1,212	19(6.1%)	291(93.9%)	25.6%	13.5%
	2013/2014	1,212	46(8.6%)	490(91.4%)	44.2%	33.0%
	2014/2015	1,212	77(13.2%)	508(86.8%)	48.3%	19.7%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제주 국제학교의 운영 및 관리 실태와 개선방향, 2015.

■ 제주국제학교 파급효과

- 학생 1인당 제주도내 소득창출효과 연간 약 4,100만원(출처: 한국경제연구원, 영어교육도시 파급효과 실증분석, 2016.6)
- NLCS JEJU와 BHA 세계100위권 대학 진학 성과
 - NLCS JEJU연평균 진학률 61.9%, BHA 연평균 진학률 56.4%, SJA JEJU연평균 진학률 34.6%

■ 제주국제학교 진학률

- 제주국제학교 진학률은 2022년 기준 NLCS JEJU 61.0%, BHA 42.4%, SJA JEJU 37.3%로 나타남

<표 III-42> 제주국제학교 진학률

(단위 :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NLCS JEJU	진학생수	42	57	62	71	63	70	72
	졸업생수	57	87	96	127	121	116	118
	진학률	73.7	65.5	64.6	55.9	52.1	60.3	61.0
BHA	진학생수		40	45	49	30	28	39
	졸업생수		49	71	81	67	61	92
	진학률		81.6	63.4	60.5	44.8	45.9	42.4
SJA JEJU	진학생수					11	13	19
	졸업생수					35	37	51
	진학률					31.4	35.1	37.3

자료 : 국제학교법인 제인스(JEINS) 학교 설명자료(대외비).

제4장 강릉시 국제학교 설립 관련 여건 분석

제1절 강릉시의 국제화 여건

1. 경제자유구역 현황

1) 개발개요 및 투자여건

(1)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사업개요

- 지정일자 : 2013년 2월 4일(지식경제부고시 제2013-35호 근거)
- 총사업비 : 8,859.5억원
- 사업기간 : 2013년부터 2024년(12년간)
- 사업면적 : 4.33km²
- 개발비전 : 명품 관광산업 및 첨단소재산업 육성으로 동북아 경제중심지 건설
- 개발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강릉시, 동해시 일원)
- 공간구상 : 동해항 중심 단위별 지구조성(3개지구)
 - 지구별 위치 : 동해시 구호동 및 망상동, 강릉시 옥계면
 - 지구간 연계 : 동해시 북평 중심 반경 17km 이내 각 지구 연계(20분 내 이동 가능)
 - 지구간 교통 : 도로(일반국도 7번 및 동해고속도로), 철도(동해안권 인입철도)

<표 IV-1>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위치 및 면적

	지구명	위치	면적(km ²)	비율(%)
동해	북평 국제복합산업지구	동해시 구호동 일원	0.15	3.5
	망상 국제복합 관광도시	동해시 망상동 일원	3.8	87.7
강릉	옥계 첨단 소재 융복합 산업지구	강릉시 옥계면 일원	0.38	8.8
3개 지구			4.33	100.0

(2) 옥계 첨단소재 융복합산업지구 개발개요

■ 개발개요

- 위 치 : 강릉시 옥계면 일원
- 면 적 : 0.38km²
- 사업비 : 574억원
- 주요기능

- 초경량 소재 부품 산업 클러스터
- 해외첨단기술 도입을 통한 첨단소재·부품 연구단지



〈그림 N-1〉 옥계 첨단소재 융복합산업지구 개발구상 및 토지이용계획

■ 투자여건

- 국내·외 자원을 활용한 첨단소재산업 최적지
 - 북한·중국·러시아 자원 협력이 가능한 비철금속 소재사업 육성 최적지
 - 비철금속 생산 및 수입에 필요한 무역항 확보 → 옥계항, 동해항
 - 육상운송로(고속도로, 철도) 개선에 따른 국내산업과 연계성 확보
 - 최적의 산업 인프라(전력, 용수, LNG 등) 확보
- 초경량 비철금속 클러스터 조성
 - 아연, 동, 마그네슘, 알루미늄 등 경량소재 특화
 - 초경량 소재를 이용한 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 북방 항로를 이용한 국제 해운 편의성 증대
- 인접 R&D 센터를 통한 기술지원
 - 강원테크노파크, KITECH 강원본부 인접 위치
 - R&D 센터 신소재 개발기술 활용
 - 비철금속 연구분야 기술지원

(3) 망상 국제복합 관광도시 개발개요

■ 개발개요

- 위치 : 동해시 망상동 일원

- 면 적 : 3.8km²
- 사업비 : 8,269억원
- 주요기능
 - 정주가능한 국제복합 관광도시 조성
 - (호텔, 리조트, 주거, 상업, 테마파크, 병원, 국제학교 등)
 - 동북아 관광산업의 거점 도시



〈그림 4-2〉 망상 국제복합 관광도시 개발구상 및 토지이용계획

■ 투자여건

- 환동해권 관광·휴양경제의 중심 거점
 - 동해항, 양양국제공항, KTX 등 동북아 교통요지에 입지한 관광과 교역의 중심
 - 동해바다, 금강산, 설악산, 오대산, DMZ 등과 연계한 사계절 복합 관광지
 - 중국, 일본, 러시아와 연접한 동북아시아권 관광객 유치의 적지
- 지속가능한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최적의 여건 제공
 - 약 5km에 달하는 망상해변, 청정하고 쾌적한 기후
 - 지구 후방에 산지, 앞으로는 바다가 위치하여 다양한 관광시설 조성 가능
- 국내 최고의 맑은 바다, 청정한 산림과 대기 환경
 - 여름철에는 시원하고, 겨울철에는 영상의 기온 유지
 - 국내에서 미세먼지로부터 가장 안전한 지역
- 남북관계 개선과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 동해안 유일의 경제자유구역으로 북방경제권의 매력있는 투자지역으로 부상
 - 장기적으로 동해안권 남북경제교류의 중심지로 발돋움

2) 국제학교 설립 관련 경제자유구역 여건 검토

○ 경제자유구역내 국제학교 설립 근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음

<표 IV-2> 경제자유구역 인센티브

인센티브	내용	규정
외국어 서비스 제공	-공문서 외국어로 발급하거나 외국어로 된 공문서 접수·처리등	경제자유구역법 제20조
우수한 교육 환경	-외국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 설립 및 운영 허용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제공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제정으로 각종 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법 제22조
안전한 의료 환경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및 운영 허용 -의료기관의 부대사업(보양온천 등)에 관한 특례 인정	경제자유구역법 제23조& 제23조의2
기타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외투금액 5억불 이상) 허가 등의 특례 허용 -유선방송의 외국방송 채널 수 확대 구성·운영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기간 상한 특례 허용	경제자유구역법 제23조의3, 24조, 제24조의3

○ 동 법을 활용할 경우 국제학교 설립 가능 지역

- 따라서, 강원도가 동 법을 활용하여 경제자유구역내 국제학교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망상국제복합관광도시가 후보지로 검토 가능함
- 그 이유로는 주택, 근린생활, 상업, 관광, 공공시설 등을 포함하는 국제복합 관광도시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적절한 배후시설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임

○ 강릉시 옥계 첨단소재 융복합산업지구의 국제학교 설립 가능성 검토

- 옥계 첨단소재 융복합산업지구의 개발계획 변경 추진을 통해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음
- 개발계획 변경시 망상 국제복합 관광도시 개발계획과 중첩되지 않는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첨단소재 관련 R&D 기능 강화와 주택 및 근린생활 용지를 확보하여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강릉시 국제화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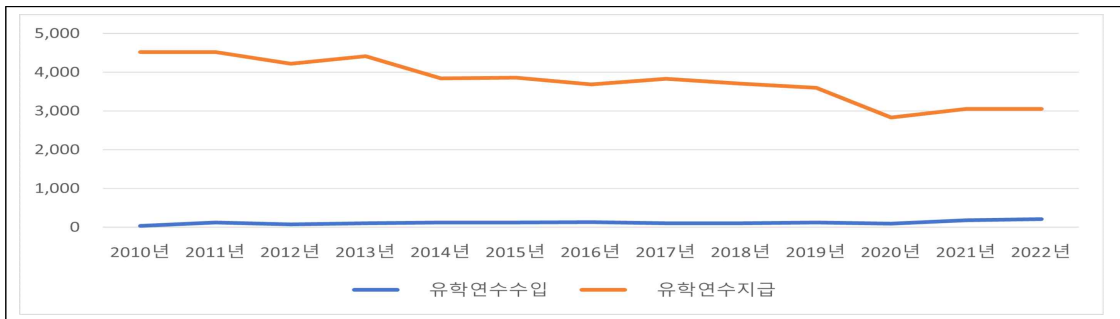
1) 강릉시 교육의 국제화 필요성

■ 국제화 여건

- 국제화 시대의 지방정부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으며, 과거 국가중심의 국제경쟁이 오늘날 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으로 경쟁주체가 변화함에 따라 지역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국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한 비전, 목표, 전략 등이 체계화된 국제화 추진이 요구됨
- 도시 국제화의 핵심 요인은 “교육의 국제화”라고 할 수 있음
 - 싱가포르와 홍콩의 투자자유지역과 교육사례에서 시사 하는 것처럼 국제적 비교우위를 위한 전략적 핵심 요인은 교육임
 -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교육은 경쟁력의 핵심 원천이며, 특히 교육은 ‘경제과급’ 효과가 매우 높음
- 강릉시는 환동해권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국제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특수한 지역
 - 향후 대규모 개발과 외국투자기업의 활성화 등 국제 교류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는 도시임
 - 이러한 여건은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 정책을 통하여 국제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갖게 되었으며, 이는 경제·사회적인 측면뿐만아니라 교육의 변화도 함께 가져오게 되었음
-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들에게 교육의 다양성 제공과 외국인 유치를 위한 친환경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시점임
 - 국제학교 설립은 고품격의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강릉의 이미지 제고와 함께 지역 경제 구도의 개선 효과를 높이게 될 것임
 - 또한 국제학교(외국인학교) 설립으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며 국내·외 경쟁력을 높이는 기초를 확립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확대하여 다양화된 특성화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국제학교 유치 필요성

-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 국제학교 설립을 통한 외국인 교육 정주환경 개선은 장기적으로 외투기업 유치의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음
- 유학수지 적자 해소
 - 만성적 유학수지 적자의 해소를 위해 국내 국제학교의 설립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음
- 국내 인재유출 방지 및 해외 인재확보
 - 국내의 글로벌 인재양성과 해외 인재유입의 촉진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그림 IV-3> 우리나라 유학수지 추이

2) 강릉시 교육재정 여건

■ 강릉시 교육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2023-2027)

- 교육분야는 전체의 0.6% 비중으로, 계획기간 중 3.7% 감소 전망
-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분야는 학교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교육여건 개선
 -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원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나, 고등교육분야는 미래인재육성재단 지원 등이 2026년 중기기간 내 마무리 되면서 신장률이 감소되는 것으로 향후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지속 투자예정

<표 IV-3> 강릉시 중기지방재정계획(2023-2027) 중 교육 관련 투자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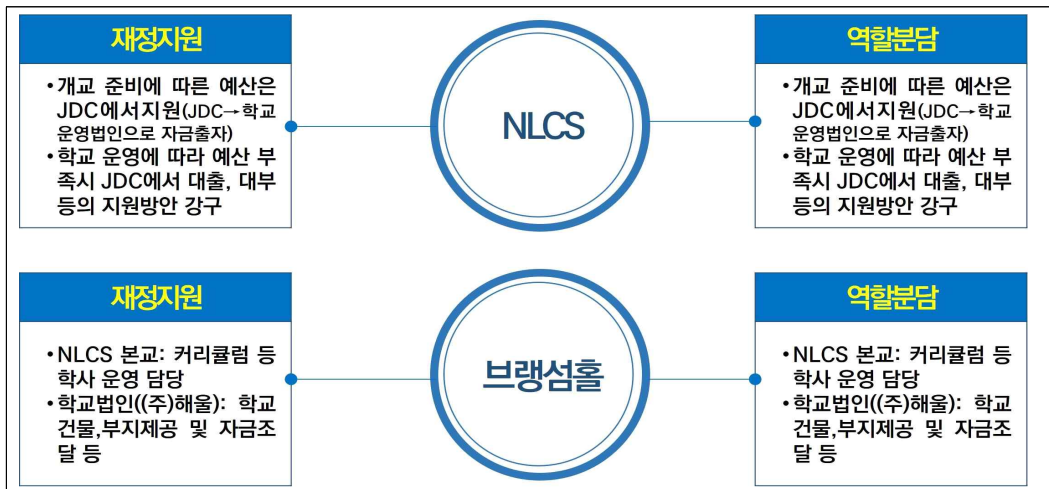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비중	연평균 증감률
합계	11,438	11,217	11,537	11,362	9,817	55,371	0.6%	△3.7%
유아및초중등교육	6,456	6,456	6,681	6,436	6,436	32,464	0.3%	△0.1%
고등교육	2,585	2,585	2,565	2,565	965	11,265	0.1%	△21.8%
평생직업교육	2,397	2,176	2,292	2,361	2,416	11,641	0.1%	0.2%

자료 : 강릉시, 중기지방재정계획(2023-2027).

■ 강릉시가 국제학교 재정지원을 위한 부담능력 검토 필요

- 제주국제학교의 재정지원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개교 및 학교 운영 관련 JDC에서 학교법인으로 자금출자, 대출, 대부 등 지원, 학교건물, 부지제공 및 자금조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있음



<그림 IV-4> 국제학교 재정지원 부담능력 관련 제주국제학교 모델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2015). 제주 국제학교의 운영 및 관리 실태와 개선방향, 2014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 강릉시가 독자적으로 국제학교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재정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3) 지방자치단체의 치열한 국제학교 설립 추진 경쟁

- 대구시, 인천시, 광역시, 울산시,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등 광역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내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춘천시, 원주시, 양양군 등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외 지역에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표 IV-4> 지방자치단체 국제학교 설립 추진 현황

구분	추진경과	비고
대구시 (수성구)	-수성의료지구 경제자유구역에 국제학교 설립을 모색	-초·중·고 학생 해외유학으로 인한 대구시 학생 유출이 지난 2019년 기준 262명에 달하는 점도 국제학교 추가 설립 당위성을 뒷받침
인천시	-칼빈 매니토바 국제학교(외국교육기관) 인천 송도국제도시 2023년 개교	
광주시	-광주경제자유구역청과광주도시공사 등을 통해 학교 부지 물색 중	- 부지 결정 못해 '고심' 중
울산시	-국제도시화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국제학교 설립 작업을 백지화	-외국인 수요 부족(2021년 울산의 F3 비자 소지 외국인 총 444명) -인근 기존 학교와의 경쟁력을 확보 미흡(부산 국제외국인학교와의 경쟁 부담)
강원도	-국제학교 유치 희망 지자체 : 춘천시, 원주시, 양양군 등 -춘천시 : 2024년 교육자유특구 공모 참여 시사 -원주시:민선8기 공약인 국제학교 유치를 통한 교육 인프라 확충 제시 -강원도교육청 : 강원형 국제학교 타당성 검토	-제주 한국국제학교(KIS)는 정원의 5%까지 제주도내 학생 입학 특례에 따른 2022년 특례 입학 학생 수는 정원의 1.02%(8명)에 불과
충청북도	-오송화장품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 내 국제학교 설립 추진 중	
전라북도	-공약으로 국제학교 유치 시사 -국제학교 설립·운영·유치 사례 분석 연구용역 착수	
평택시	-고덕신도시에 2026년 개교 목표로 추진	

자료 : 각 언론사, 기사검색.

- 강릉시는 경제자유구역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현 법제도내에서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이지만,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시 강원특별자치도내 타 기초자치단체와 유치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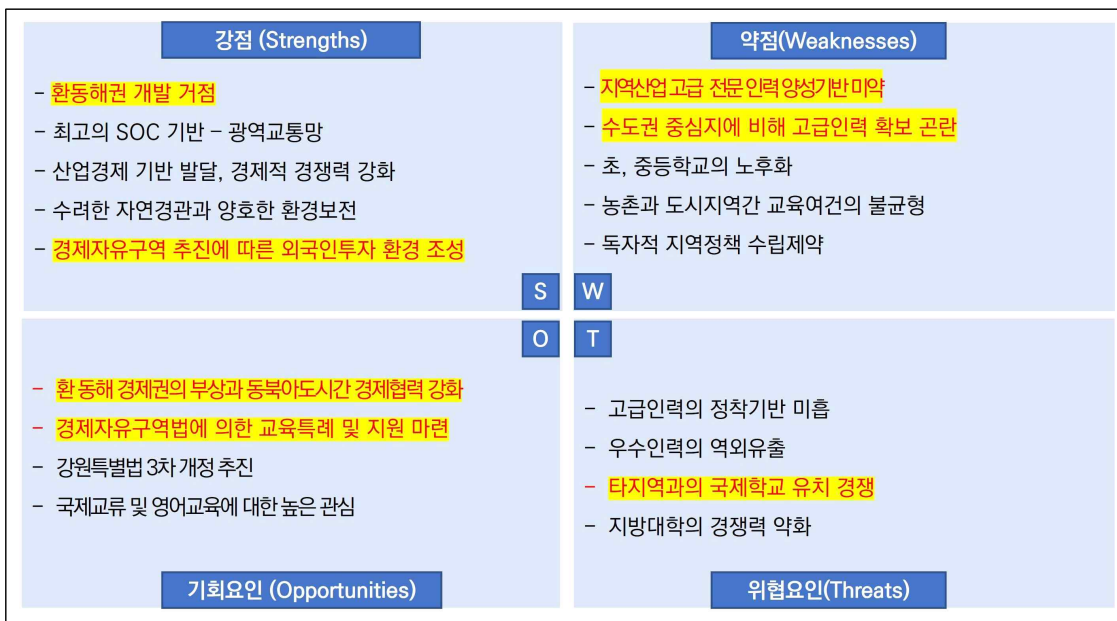
제2절 강릉시 교육 국제화를 위한 SWOT 분석

■ 강릉시의 강점

- 환동해권 개발 거점에 위치한 강릉시는 경제자유구역 추진에 따른 외국인투자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서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음
- 특히, 강릉시가 보유한 우수한 광역교통망과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정주여건이 우수한 편으로 쾌적한 환경에서의 국제화 교육이 가능한 지역임

■ 강릉시 약점

- 지역산업 관련 고급 전문인력 양성기반이 미약하여 우수한 고급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국제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재정적 측면에서 어려운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그림 IV-5〉 강릉시 교육 국제화를 위한 SWOT 분석

■ 강릉시 기회요인

- 환동해경제권의 부상으로 동북아도시간 경제협력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어 있어서 외국인투자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한 교육특례 및 지원이 가능한 강원특별자치도내 유일한 지역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강릉시 위협요인

-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내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타 지역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함
- 고급인력의 정착 기반이 미흡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쾌적한 정주기반이 조성될 필요가 있음

제5장 강릉시 국제학교 설립 및 운영 모델 검토

제1절 강릉시 국제학교 설립 기준 검토

1. 국제학교 설립 모델 구상 기준

- 국제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6개의 국제학교 설립 모델 구상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 첫째, 수월성으로 학생선발을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가로 우수한 학생 중심으로 선발할 것인지, 일반 학생 중심으로 선발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함
- 둘째, 학교간 비교로 납부금액 결정, 커리큘럼 운영, 시설, 학생선발, 교수 봉급 등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지역의 국제학교와 비교하여 적정수준의 규모를 결정해야 함
- 셋째, 공공성 대 영리성으로 공공성은 공교육 특성을 반영하여 학생의 접근을 용이하게, 영리성을 강조했을 때는 경쟁력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자치단체 입장에서 학교운영의 방향을 결정해야 함
- 다섯째, 학교구성 수준으로 Pre-K에서 k12까지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단일 또는 두 개 학교 정도만 운영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함
- 여섯째, 재정지원 여부로 정부 및 공공기관 재정지원을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관여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해야 함

<표 V-1> 국제학교 설립 모델 구상 기준

구분	주요내용
수월성	-우수한 학생중심으로 선발할 것인지, 일반 학생 중심으로 선발할 것인지
학교간 비교	-납부금액결정, 커리큘럼운영, 시설, 학생선발, 교수 봉급 등
공공성 대 영리성	-공공성은 공교육 특성을 반영하여 학생의 접근을 용이하게, 영리성을 강조했을 때는 경쟁력에 중점을 둠
학교운영방향	-학생구성커리큘럼운영학생진로방향등 학교 운영방향을 국내중심으로 할 것인가, 국외 중심으로 할것인가
학교구성 수준	-Pre-K에서 k12까지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단일 또는 두개 학교 정도만 운영할 것인가
재정지원 여부	-정부 및 공공기관 재정지원을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관여하지 않을것인가에대한 고려

2. 국제학교 설립 기준 검토

1) 수월성 검토



<그림 V-1> 수월성 수준에 따른 결과 예측

2) 학교간 비교 검토



<그림 V-2> 학교간 비교 수준에 따른 결과 예측

3) 공공성 대 영리성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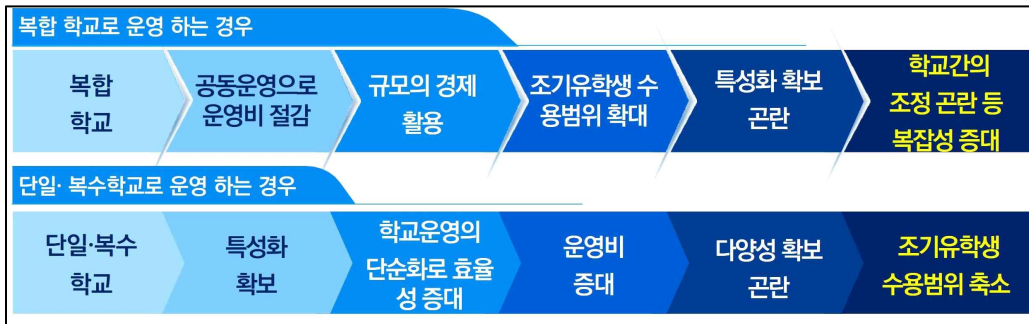
<그림 V-3> 공공성 대 영리성 비교 수준에 따른 결과 예측

4) 학교운영방향 검토



<그림 V-4> 학교운영방향 수준에 따른 결과 예측

5) 학교구성 수준 검토



<그림 V-5> 학교구성 수준에 따른 결과 예측

6) 재정지원 여부 검토



<그림 V-6> 재정지원 여부에 따른 결과 예측

제2절 강릉시 국제학교 설립 모델 검토

1. 공영형 외국교육기관 설립

1) 설립 목적

- 이 학교는 강릉시의 국제적 변화에 필요한 국제적 자질과 실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주된 목적임
- 단지 국내 학생과 비교하여 교과성적이 좋은 학생이 아니라 국제적 기준에서 볼 때 뛰어난 문화적 소양과 아울러 국제적 의사소통능력 및 마인드를 고루 갖춘 국제적 인물을 키워내는 것이 목적임

2) 국제학교 종류 : 공영형 외국교육기관

- 이 학교는 국제화된 환경 속에서 강릉시에서 국제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 목적임
 - 따라서 다양한 국적의 내·외국인 학생으로 구성하여 국제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가 되어야 함
- 다음과 같은 사유로 아래의 학교 유형은 배제함
 - 일반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설립하므로 강릉시의 재정적 부담이 적지만 전통적이고 폐쇄적인 교육과정을 따를 뿐만 아니라 교육청의 통제를 받아야 하므로 교육과정 편성과 교원임용 등 국제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배제함
 - 외국인학교는 국제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좋지만 3년 이상 외국거주자만 입학이 허용되므로 강릉시민들의 자녀가 보편적으로 입학할 수 있는 길이 막힘에 따라 시민들의 반발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배제함
 - 교육특구로 지정받아 강릉시가 직접 공립학교(강릉시립학교)를 세우는 것은 외국인 교원 임용 등의 장점이 있지만 강릉시의 재정적 부담을 초래함과 동시에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따라야 하는 통제가 있으므로 배제함
- 강릉시에서 위의 학교설립목적에 맞게 국제화된 교원·학생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국제신도시 포함) 내의 외국교육기관으로 인가를 받는 것이 가장 적절함
 - 다만, 내국인 입학 비율이 제한된다는 단점과 함께 설립자격이 외국학교법인으로 한

정되어 있어 인천과 제주 등의 전례에서 볼 수 있듯이 유치기관의 의향보다는 외국교육기관의 의향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있어 유치 자체가 매우 불투명하고 어려움

- 유치를 위해서는 학교설립을 위한 강릉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학교형태를 공영형 외국교육기관으로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공영형 외국교육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지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외국학교법인이 설립·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을 말함(「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1항 제1호)

사업주체(강릉시)	비영리 외국학교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부지 및 건물 임대 제공 - 부지 및 건물 소유는 강릉시이며, 무상 또는 유상 임대 공급 - 경제자유구역 부지 활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개교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설립인가, 기자재 구입 등 학교 개교준비 전반에 관한 사항 - 교사 및 학생 확보 등 학사 운영 - 재원 확보, 재무회계 관리 등 - 기타 학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그림 V-7> 국제학교 설립시 기관별 역할

3) 국제학교 설립 유형 : 사립학교

- 외국학교법인이 세우게 되므로 사립학교의 형태를 가지게 되지만,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강릉시 등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도 부지 매입 등 다양한 지원을 하여야 함
- 전국 단위의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숙사를 운영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중등학교급을 우선적으로 설립할 수 있음
 - 향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초등학교 이하 설립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2. 설립 재원 조달

- 이 학교는 국제화 환경 속에서 외국인의 정주여건 조성과 아울러 강릉시의 국제화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세우려는 학교이므로 학생구성에 따라 다양한 재원이 투입되어야 할 것임
-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릉시도 국제적 수준의 학교를 유치한다는 취지에서 다음과 같이 협력하여 그 설립재원을 분담하여야 할 것임
 - 예시)설립주체 및 재원: 강원특별자치도(50%) + 강릉시(30%)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

- 이를 조건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설립 재원을 조달할 경우 다음과 같이 외국교육기관 운영에 참여할 수 있음

제13조(국·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 이 법에 의하여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외국학교법인에 대한 국·공유 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하여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의 외국인투자자에 관한 지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등”을 “외국학교법인”으로 본다.

제14조(재정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지원에 따른 조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사전 동의를 있는 경우 외국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에의 참여.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지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외국학교법인이 설립·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공영형 외국교육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의 사전동의 없이 참여할 수 있다.
 2.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으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는 일
 3. 해당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예산운용이 지원의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변경에 관한 조치의 권고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지원성고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이 제1항제3호에 따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3절 강릉시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로드맵

1. 강릉시 국제학교 설립 관련 쟁점 및 위협요인 검토

■ 강원특별자치도내 국제학교 설립 추진 중인 경쟁 지역의 비교우위 선점

- 강원특별자치도내에 미군기지 주변지역 등 지원 관련 춘천시와 원주시가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 앞서 지적하였듯이, 본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 법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8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의 특례)에 따라서 국제학교의 설립이 가능한 지역으로 현재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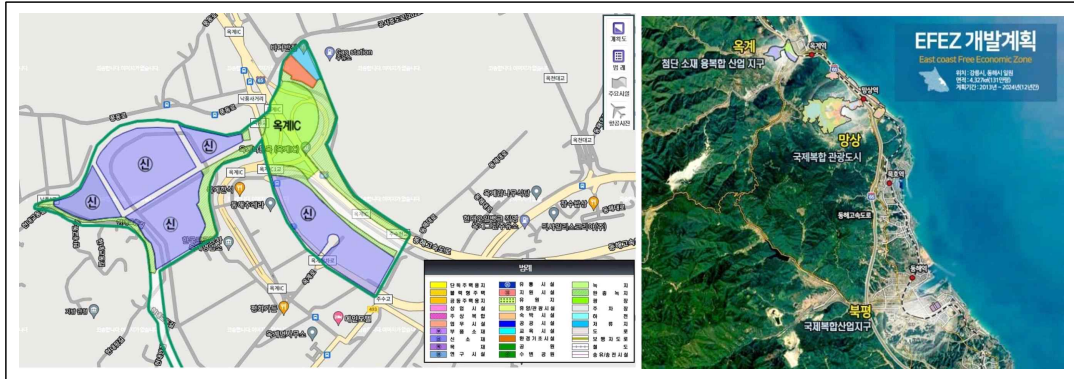
<그림> 미군기지 주변지역 등 지원 관련 강원특별자치도내 지치단체 사업계획

자료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올해, 미군기지 주변지역 등 지원에 1조 9천여억 원 투), 2023.3.6.

- 따라서, 이들 지역과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확대를 위한 계획 변경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첨단소재 융복합산업지구(강릉시 옥계면 일원)는 면적이 0.38km²로 매우 협소한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 확보 : 옥계지구에 대한 구역 확대를 통한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 확보가 필요하며, 이 경우 강원도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필요함



<그림 V-8> 옥계첨단소재 융복합산업지구 규모

■ 강릉시 재정여건 고려

- 강원특별자치도내 국제학교 설립 추진을 진행중에 있는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의 최근 5년간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강릉시의 재정여건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비교열위에 있는 것이 현실임
-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국제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재정건전성 강화 등을 통해 재정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표 V-2> 국제학교 설립 추진 자치단체 재정여건 비교

(단위 : 백만원, %)

구분	세입예산	세출예산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정책사업비중	
2023	춘천시	1,787,371	1,787,371	20.12	59.37	83.63
	원주시	1,751,368	1,751,368	18.97	55.02	86.39
	강릉시	1,595,232	1,595,232	15.12	59.42	84.7
2022	춘천시	1,548,765	1,548,765	19.28	59.33	84.58
	원주시	1,623,720	1,623,720	18.89	53.84	86.38
	강릉시	1,339,126	1,339,126	15.13	57.78	85.03
2021	춘천시	1,596,037	1,596,037	19.09	55.85	83.07
	원주시	1,662,779	1,662,779	18.83	51.44	85.21
	강릉시	1,254,754	1,254,754	15.46	54.15	84.62
2020	춘천시	1,473,953	1,473,953	21.28	63.31	83.86
	원주시	1,464,607	1,464,607	19.79	56.22	80.84
	강릉시	1,068,572	1,068,572	17.78	61.52	83.38
2019	춘천시	1,303,897	1,303,897	22.29	62	80.1
	원주시	1,290,473	1,290,473	23.42	60.89	82.02
	강릉시	964,604	964,604	17.36	62.04	81.91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https://www.lofin365.go.kr/portal/LF4100002.do>).

■ 국제학교 설립에 대한 강릉시민의 의지

- 법제도적으로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인 강릉시는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강릉시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야 추진이 가능함
- 따라서, 강릉시민의 의지가 어떠한 수준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며, 이를 이끌기 위한 전략적 관점에서의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2. 강릉시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로드맵

1) 추진과정



<그림 V-9> 외국교육기관 유치과정

2) 주요 추진 계획

- 강릉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 강릉국제학교 설립 관련 강릉시,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포럼을 운영하여 강릉국제학교 설립의 취지 및 타당성에 대한 의견 청취
- 강릉국제학교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 강릉국제학교 설립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수행을 통해 구체적인 교육수요 추

- 정 및 국제학교 설립 방향 검토
 - 국제학교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재정수요 예측 및 타당성 검토
 - 국제학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강릉국제학교 설립 타당성 검토에 근거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옥계첨단소재 융복합산업지구) 발전계획 변경 추진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과 연계하여 옥계첨단소재 융복합산업지구의 발전계획 변경 추진
 - 주요 발전계획에 강릉국제학교 부지 및 편의시설 포함되도록 계획변경 추진
- 국제학교 설립준비단 발족
 -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설립 추진을 위해 ‘(가칭)강릉국제학교 설립 준비단’ 구성·운영
 - 준비단 구성 및 운영안 : 각계의 권위자로 구성
 - 준비단 역할 : 설립에 대한 각종 자문 및 의결, 기본 계획 수정·보완, 부지 및 예산 확보 활동 전개 등
 - 실무적인 뒷받침 및 세부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설립준비단 산하에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관련부서 담당자 및 각계 실무자급 전문가 등으로 구성
 - 강릉국제학교 운영을 위한 외국교육기관 MOU체결 지원

3) 재원 확보 방안

- 국비확보 검토
 - 옥계첨단소재 융복합산업지구 인접 국유지 및 재정지원 가능성 검토
- 도비확보 방안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첨단소재 융복합산업지구 구역계 확장을 통한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 확보
- 시비확보 방안
 - 국제학교 설립 부지 및 건축비 지원을 위한 강릉시와 강릉시의회의 협력체계 구축

